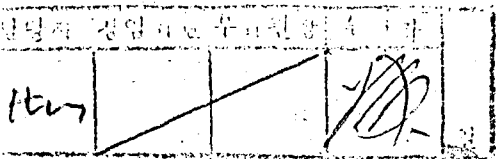


제 733 호

1979. 9.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경 상 천
편 집 : 문화공보관 심 계 섭
 전화 7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362 호 : 서울특별시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 3

제 1363 호 : 서울특별시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 13

◎ 규 칙

제 1816 호 :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접수제 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57

◎ 고 시

제 414 호 :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지적승인..... 78

제 415 호 : 도시계획시설(녹지)지적승인..... 78

제 416 호 : 양동제 7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79

제 417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86

제 418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수산물공판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 86

<이번호계속>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419 호 :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학교) 변경결정	87
제 420 호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87
제 421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정정	88
제 422 호 :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89
제 423 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90
제 424 호 :	취락구조개선사업울위한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변경	91
제 425 호 :	도시계획미관지구 지적승인	92

◎ 공 고

제 313 호 :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92
제 317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93
제 322 호 :	출장소위키변경공고	94
제 323 호 :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95
제 324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95
제 326 호 :	환지처분 (망우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고	96
제 327 호 :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96
제 328 호 :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97
제 330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00
제 485 호 (성동구공고) :	공인개각공고	102

◎ 사 령

조 례

◎서울특별시조례제 1362 호

서울특별시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구별 관할 법정동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구로구 및
동작구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198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
1979년 9월 29일

<별표> 구 별 관 할 법 정 동

구 별	동 (가) 명
종 로 구 (87개동)	청운동, 신태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 동, 옥인동, 통의동, 적선동, 필운동, 채부동, 사직동, 내자동, 내수동, 당주동, 도림동, 새종로동, 신문로1가, 신문로2가, 종로1가, 종로2가, 종로3가, 종로4가, 종로5가, 종로6가, 서린동,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공병동, 관훈동, 전지동, 권농동, 운니동, 와룡동, 낙원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뚝방동, 삼청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재동, 개동, 원서동, 돈의동, 보동, 훈정동, 봉익동, 관수동, 장사동, 예지동, 인의동, 연지동, 원남동, 효제동, 충신동, 이화동, 연건동, 동숭동, 혜화동, 송인동, 구기동, 병창동,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교남동, 병동, 송월동, 교북동, 홍파동, 행촌동, 무악동, 창신동, 명륜동1가, 명륜동2가, 명륜동3가, 명륜동4가
중 구 (75개동)	태평로1가, 태평로2가, 무교동, 다동, 을지로1가, 을지로2가,

구 별	동 (개) 명
중 구 (75 개 동)	울지로 3 가, 울지로 4 가, 울지로 5 가, 울지로 6 가, 울지로 7 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포동, 남대문로 1 가, 남대문로 2 가, 남대문로 3 가, 남대문로 4 가, 남대문로 5 가, 소공동, 북창동, 남창동,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 1 가, 의주로 2 가, 만리동 1 가, 만리동 2 가, 중립동, 충정로 1 가, 양동, 봉래동 1 가, 봉래동 2 가, 회현동 1 가, 회현동 2 가, 회현동 3 가, 충무로 1 가, 충무로 2 가, 충무로 3 가, 충무로 4 가, 충무로 5 가, 명동 1 가, 명동 2 가, 남산동 1 가, 남산동 2 가, 남산동 3 가, 저동 1 가, 저동 2 가, 인현동 1 가, 인현동 2 가, 예관동, 목정동, 필동 1 가, 필동 2 가, 필동 3 가, 주자동, 남학동, 예장동, 장충동 1 가, 장충동 2 가, 쌍림동, 광희동 1 가, 광희동 2 가, 주교동, 방산동, 오장동, 입정동, 산림동, 초동, 홍인동, 황학동, 신당동, 무학동
동대문구 (16 개 동)	신설동, 봉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청량터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면목동, 상봉동, 묵동, 망우동, 중화동, 신내동
성 동 구 (25 개 동)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도선동, 홍익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용봉동, 금호동 1 가, 금호동 2 가, 금호동 3 가, 금호동 4 가, 성수동 1 가, 성수동 2 가, 옥수동, 화양동, 모진동, 종곡동, 능동, 군자동, 용답동, 송정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성 북 구 (39 개 동)	성북동 1 가, 성북동, 동소문동 1 가, 동소문동 2 가, 동소문동 3 가, 동소문동 4 가, 동소문동 5 가, 동소문동 6 가, 동소문동 7 가, 삼선동 1 가, 삼선동 2 가, 삼선동 3 가, 삼선동 4 가, 삼선동 5 가, 동선동 1 가, 동선동 2 가, 동선동 3 가, 동선동 4 가, 동선동 5 가, 돈암동, 안암동 1 가, 안암동 2 가, 안암동 3 가, 안암동 4 가, 안암동 5 가, 정릉동, 종암동, 상월곡동, 하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걸음동, 보문동 1 가, 보문동 2 가, 보문동 3 가, 보문동 4 가, 보문동 5 가, 보문동 6 가, 보문동 7 가
도봉구(13개동)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쌍문동, 창동, 월계동, 공릉동,

구 별	동 (가) 명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도봉동, 방학동
서 대 문 구 (20 개 동)	충정로 2 가, 충정로 3 가, 합동, 미근동,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대신동, 대현동, 신촌동, 봉원동, 홍제동, 창천동, 연희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은 평 구 (13 개 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대조동, 녹번동, 응암동, 역촌동, 신사동, 증산동,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수색동
마 포 구 (27 개 동)	아현동,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구수동, 현석동, 창전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하수동, 당인동,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용 산 구 (38 개 동)	후암동, 도동 1 가, 도동 2 가, 용산동 1 가, 용산동 2 가, 용산동 3 가, 용산동 4 가, 용산동 5 가, 용산동 6 가, 남영동, 동자동, 청파동 1 가, 청파동 2 가, 청파동 3 가, 서계동, 갈월동, 원효로 1 가, 원효로 2 가, 원효로 3 가, 원효로 4 가, 신창동, 산천동, 효창동, 도원동, 용문동, 문배동, 신계동, 한강로 1 가, 한강로 2 가, 한강로 3 가, 이촌동, 이태원동, 한남동, 동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보광동, 청암동
영 등 포 구 (33 개 동)	영등포동 1 가, 영등포동 2 가, 영등포동 3 가, 영등포동 4 가, 영등포동 5 가, 영등포동 6 가, 영등포동 7 가, 영등포동 8 가, 여의도동, 당산동, 당산동 1 가, 당산동 2 가, 당산동 3 가, 당산동 4 가, 당산동 5 가, 당산동 6 가, 도림동, 문래동 1 가, 문래동 2 가, 문래동 3 가, 문래동 4 가, 문래동 5 가, 문래동 6 가, 양평동 1 가, 양평동 2 가, 양평동 3 가, 양평동 4 가, 양평동 5 가, 양평동 6 가, 신길동, 대림동, 양화동, 영등포동
구 로 구 (12 개 동)	신도림동,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함동

구 별	동 명
관악구 (3개동)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동작구 (9개동)	노량진동, 상도제1동, 상도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강남구 (26개동)	양재동, 원지동, 우면동, 압구정동, 신사동, 학동, 논현동, 청담동, 삼성동, 반포동, 서초동,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개포동, 포이동, 잠원동, 염곡동, 내곡동, 신원동, 자곡동, 율현동, 새곡동, 일원동, 수서동, 방배동
강동구 (23개동)	이동, 신천동, 잠실동, 명일동, 상일동, 하일동, 고덕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풍납동, 천호동, 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오금동, 방이동, 마천동, 거여동
강서구 (16개동)	염창동, 목동, 등촌동, 화곡동, 신월동, 가양동,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 신정동

< 개 정 연 혁 표 19 >

조례 제 1362 호 ('79.10.1시행, 단 구로구, 동작구관련사항은 80.4.1시행)

1. 동대문구 봉두동중 다음 지역을 동대문구 계기동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동대문구	봉두동	192 의 1		동대문구	봉두동	193 의 71	
		193 의 1				193 의 83	
		193 의 3				138 의 13	
		193 의 7				138 의 15	
		193 의 8				138 의 16	
		193 의 17				138 의 20	
		193 의 32				138 의 22	
		193 의 33				138 의 62	
		193 의 34				138 의 63	
		193 의 52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동대 문구	용두동	138 의 64		동대 문구	용두동	138 의 93	
		138 의 65				138 의 94	
		138 의 66				138 의 95	
		138 의 67				138 의 96	
		138 의 68				138 의 97	
		138 의 69				138 의 98	
		138 의 70				138 의 99	
		138 의 71				138 의 100	
		138 의 72				138 의 101	
		138 의 73				138 의 102	
		138 의 74				138 의 103	
		138 의 75				138 의 104	
		138 의 76				138 의 105	
		138 의 77				138 의 106	
		138 의 78				138 의 107	
		138 의 79				138 의 108	
		138 의 80				138 의 109	
		138 의 81				138 의 110	
		138 의 82				138 의 111	
		138 의 83				138 의 112	
		138 의 84				138 의 113	
		138 의 85				138 의 114	
138 의 86		138 의 115					
138 의 87		138 의 116					
138 의 88		138 의 117					
138 의 89		138 의 144					
138 의 90		138 의 157					
138 의 91		138 의 158					
138 의 92		138 의 159					

2. 동대문구 회기동중 다음 지역을 동대문구 휘경동에 편입한다.

$$X = 454,175$$

이문로중심선 (좌표 $Y = 204,876$,

$$X = 454,000 \quad X = 453,951$$

$$Y = 204,154 \quad , \quad Y = 204,766$$

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경계로한 이동 지역.

3. 동대문구 휘경동중 다음 지역을 동대문구 회기동에 편입한다.

$$X = 454,383$$

$$Y = 204,952,$$

$X = 454,188$
 $Y = 204,865$ 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경계로한 이서지역.

4. 동대문구 상봉동중 다음 지역을 동대문구 망우동에 편입한다.

$$X = 455,163$$

$$Y = 208,347,$$

$$X = 455,099$$

$Y = 208,128$ 점을 연결하는 도로)의

이남지역으로서 좌표 $X = 455,099$
 $Y = 208,128,$

$$X = 455,000$$

$$Y = 208,133$$

점을 연결하는 20미터도로 이동지역.

5. 성동구 능동중 다음 지역을 성동구 군자동에 편입한다.

$$X = 450,078.50$$

$$Y = 206,754.25,$$

$$X = 449,865.50$$

$$Y = 206,673.50$$

점을 연결하는 도로)의 이서지역.

6. 성동구 송정동중 다음 지역을

성동구 군자동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구 명	동 명	지 번	비고
성 동 구	송 정 동	60 의 1		성 동 구	송 정 동	60 의 13	
		60 의 6				60 의 15	
		60 의 7				60 의 16	
		60 의 9				60 의 17	
		60 의 10				60 의 22	
		60 의 11				60 의 28	
		60 의 12				60 의 29	

7. 도봉구 창동중 다음 지역을 도봉구 상문동에 편입한다.

$$X = 462,067$$

$$Y = 203,637,$$

$$X = 461,090$$

$$Y = 203,178$$

점을 연결하는 도로)을 경계로한 이서지역.

8. 구명 "강서구" 다음에 "은평구" 를 추가하고 서대문구중 다음의

동을 은평구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서 대 문 구	불 광 동	불 광 동 일 원
"	갈 현 동	갈 현 동 일 원
"	구 산 동	구 산 동 일 원
"	대 조 동	대 조 동 일 원
"	녹 번 동	녹 번 동 일 원
"	응 암 동	응 암 동 일 원
"	역 촌 동	역 촌 동 일 원
"	신 사 동	신 사 동 일 원
"	증 산 동	증 산 동 일 원
"	진 관 내 동	진 관 내 동 일 원
"	진 관 외 동	진 관 외 동 일 원
"	구 파 발 동	구 파 발 동 일 원
"	수 색 동	수 색 동 일 원

9. 강남구 삼성동중 다음지역을 분리 하여 강동구 잠실동에 편입한다.

탄천 중심선 (좌표 $X = 446,934.28$
 $Y = 205,899.16,$
 $X = 446,521.59$ $X = 444,505.09$
 $Y = 205,907.94$, $Y = 206,081.37,$
 $X = 444,431.70$
 $Y = 206,737.50$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한 이동지역.

10. 강남구 삼성동중 다음의 지역을 분리하여 강남구 일원동에 편입한다.

탄천 중심선 (좌표 $X = 444,431.70$
 $Y = 206,737.58,$
 $X = 444,164.05$ $X = 443,729.74$
 $Y = 207,376.79,$ $Y = 208,609.94$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한

이서지역.

11. 강남구 수서동중 다음의 지역을 분리하여 강동구 가락동에 편입 한다.

탄천중심선 (좌표 $X = 443,729.74$
 $Y = 208,609.94,$
 $X = 443,448.51$ $X = 443,228.97$
 $Y = 209,104.68,$ $Y = 209,360.26,$
 $X = 443,159.92$ $X = 442,412.75$
 $Y = 209,418.04,$ $Y = 209,859.49$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한 이동지역.

12. 강남구 자곡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여 강동구 문정동에 편입한다.

탄천중심선 (좌표 $X = 442,412.75$
 $Y = 209,859.59,$

X = 441,733.13 집을 연결하는
 Y = 210,243.16 하천)을 경계로한 이동지역.
 13. 강남구 울현동중 다음 지역을 분
 리하여 강동구 장지동에 편입한다.
 탄천중심선 (좌표 X = 441,733.13
 Y = 210,243.16,
 X = 441,182.83 집을 연결하는
 Y = 210,518.79 하천)을 경계로한 이동지역.
 14. 강남구 장지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여 강남구 세곡동에 편입
 한다. X = 441,182.83
 탄천중심선 (좌표 Y = 210,518.79,
 X = 440,490.75 집을 연결하는
 Y = 210,918.10 하천)을 경계로한 이서지역.
 15. 구명 "은평구" 다음에 "강동구"
 를 추가하고 강남구중 다음의 동을
 강동구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강	남	구	명	일	동	명	일	동	원
"	"	"	고	덕	동	고	덕	동	원
"	"	"	하	일	동	하	일	동	원
"	"	"	상	일	동	상	일	동	원
"	"	"	길	일	동	길	일	동	원
"	"	"	둔	촌	동	둔	촌	동	원
"	"	"	암	사	동	암	사	동	원
"	"	"	성	내	동	성	내	동	원
"	"	"	풍	남	동	풍	남	동	원
"	"	"	천	호	동	천	호	동	원
"	"	"	송	파	동	송	파	동	원
"	"	"	석	촌	동	석	촌	동	원
"	"	"	가	락	동	가	락	동	원
"	"	"	문	정	동	문	정	동	원
"	"	"	이	정	동	이	정	동	원
"	"	"	오	금	동	오	금	동	원
"	"	"	방	이	동	방	이	동	원
"	"	"	마	천	동	마	천	동	원
"	"	"	거	여	동	거	여	동	원
"	"	"	잠	실	동	잠	실	동	원
"	"	"	신	천	동	신	천	동	원
"	"	"	삼	전	동	삼	전	동	원
"	"	"	장	지	동	장	지	동	원

16. 영등포구신도림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고 그 동명을 영등포구대림동으로 한다.

안양천과 도림천이 합류되고 강서구경계와 교차되는 지점으로부터 관악구 경계까지 이어지는 도림천

- 중신선 (좌표 $X = + 5,493.0K$
 $Y = + 0.580.0K$
 $X = + 5,379.8K$ $X = + 5,205.0K$
 $Y = + 0.715.0K$, $Y = + 0.782.4K$
 $X = + 5,029.8K$ $X = + 4,970.0K$
 $Y = + 1,186.6K$, $Y = + 1,208.5K$
 $X = + 4,765.7K$ $X = + 4,523.7K$
 $Y = + 1,275.4K$, $Y = + 1,236.8K$
 $X = + 4,101.0K$ $X = + 3,882.0K$
 $Y = + 1,328.0K$, $Y = + 1,372.0K$
 $X = + 3,746.0K$ $X = + 3,600.0K$
 $Y = + 1,402.0K$, $Y = + 1,500.0K$

$X = + 3,496.2K$ $X = + 3,470.0K$
 $Y = + 1,673.1K$, $Y = + 1,756.0K$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한 동북지역.

17. 영등포구 신도림동중 다음 지역을 구로구구로동에 편입한다.

- 도림천중심선 (좌표 $X = + 4,101.0K$
 $Y = + 1,328.0K$
 $X = + 3,882.0K$ $X = + 3,746.0K$
 $Y = + 1,372.0K$, $Y = + 1,402.0K$
 $X = + 3,600.0K$
 $Y = + 1,500.0K$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 하여 서측의 구로동과 연결한 지역.

18. 구명 "강동구" 다음에 "구로구" 를 추가하고 영등포구중 다음의 동을 구로구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동 일원
영등포구	가리봉동	가리봉동 일원
영등포구	독산동	독산동 일원
영등포구	시흥동	시흥동 일원
영등포구	고척동	고척동 일원
영등포구	개봉동	개봉동 일원
영등포구	오류동	오류동 일원
영등포구	궁동	궁동 일원
영등포구	온수동	온수동 일원
영등포구	천왕동	천왕동 일원
영등포구	항동	항동 일원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동 일원

19. 관악구 동작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여 강남구 반포동에 편입한다.
반포아파트 서남측에 있는 한강지
류중심선 (좌표 $X=444,925$
 $Y=198,143$,
 $X=444,487$ $X=444,310$
 $Y=198,197$, $Y=198,484$
 $X=444,197$ $X=444,009$
 $Y=198,596$, $Y=199,045$
점을 연결하는 하천)을 경계로한
동북지역.

20. 관악구 동작동중 다음의 지역을 분리하여 강남구 방배동에 편입한다.
반포아파트 서남측에 있는 한강지
류중심선 (좌표 $X=444,009$
 $Y=199,045$
 $X=444,197$
 $Y=198,596$ 점을 연결하는 하천)

과 동작대로 중심선
(좌표 $X=444,197$ $X=444,132$
 $Y=198,596$, $Y=198,009$
 $X=443,909$ $X=443,819$
 $Y=198,448$, $Y=198,413$
 $X=443,396$
 $Y=198,410$ 점을 연결하는 도로)
을 경계로한 동남지역.

21. 관악구 사당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여 강남구 방배동에 편입한다.
동작대로중심선 (좌표
 $X=443,396$ $X=443,019$
 $Y=198,410$, $Y=198,379$

$X=442,915$ $X=442,572$
 $Y=198,362$, $Y=198,342$
 $X=441,590$ $X=441,148$
 $Y=198,311$, $Y=198,397$
 $X=440,620$ $X=440,522$
 $Y=198,766$, $Y=198,831$
 $X=441,191$ $X=440,197$
 $Y=198,878$, $Y=198,892$
 $X=439,833$ $X=439,697$
 $Y=198,806$, $Y=198,834$
 $X=439,549$
 $Y=198,914$ 점을 연결하는 도로)
을 경계로한 이동지역.

22. 관악구 사당동중 다음 지역을 분리하고 이 지역의 동명을 관악구 남현동으로 한다.
남부순천도로 및 동작대로 중심선
(좌표 $X=441,472$ $X=441,556$
 $Y=197,322$, $Y=197,655$

$X=441,607$ $X=441,590$
 $Y=198,020$, $Y=198,311$
 $X=441,148$ $X=440,620$
 $Y=198,397$, $Y=198,766$
 $X=440,522$ $X=441,191$
 $Y=198,831$, $Y=198,878$
 $X=440,197$ $X=439,833$
 $Y=198,892$, $Y=198,806$
 $X=439,697$ $X=439,549$
 $Y=198,834$, $Y=198,914$
점을 연결하는 도로)을 경계로한
서남지역.

23. 관악구 방배동을 강남구에 편입하면서 동명을 강남구 방배동으로 한다.

24. 구명 "구로구" 다음에 "동작구" 를 추가하고 관악구중 다음의 동을 동작구에 편입한다.

구 명	동 명	관 할 구 역
관 악 구	노 량 진 동	노 량 진 동 일 원
관 악 구	상 도 제 1 동	상 도 제 1 동 일 원
관 악 구	상 도 동	상 도 동 일 원
관 악 구	본 동	본 동 일 원
관 악 구	혹 석 동	혹 석 동 일 원
관 악 구	대 방 동	대 방 동 일 원
관 악 구	신 대 방 동	신 대 방 동 일 원
관 악 구	동 작 동	동 작 동 일 원
관 악 구	사 당 동	사 당 동 일 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친 인
1979년 9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1363 호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 지방공무원 (이하 " 공무원 " 이라 한다) 의 정원과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무원 정원) 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다.

제 4 조 (동장 및 사무장) ① 동사무소에

동장과 사무장을 두고 동장은 3급 을류상당의 별정직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무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한다.

㉔ 동장은 소속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에서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㉕ 사무장은 동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 (관장사무) 동사무소의 관장사 이 조례는 197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 통반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감등록 및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4. 청소에 관한 사항.
 5. 새마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6. 도로, 하천 기타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별표 1)

직 급 별	정 원	정 원 내 용
2 급		
3 급 갑 류		
3 급 을 류	382	법정직 352, 행정직 30
4 급 갑 류	267	행정직 267
4 급 을 류	115	행정직 115
5 급 갑 류	2,108	행정직 2,100, 농림직 8
5 급 을 류	3,906	행정직 3,507, 농림직 17, 토목직 382
기 능 직	29	진담 : 10 등급 29
교 용 원	709	진담부 327, 민원보조원 382
합 계	7,516	

(별표 2)

동사무소의 설치 및 그 명칭, 관할구역표

구 명	동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중 로 구	청 운 동	청 운 동 신 교 동 궁 정 동	새 중 로 동 중 새 중 로 1 번 지

구 명	동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종로구	효 자 동	효 자 동 창 성 동 통 인 동 누 상 동 누 하 동 우 인 동	
	사 직 동	체 부 동 필 운 동 내 자 동 사 직 동 통 의 동 직 선 동	
	세종로동	도 럽 농 담 주 동 내 수 동 신문로 1 가 신문로 2 가	세종로동중 세종로 1 번지를 제외한 지역
	종로 1, 2 가 동	청 진 동 서 린 동 수 송 동 중 학 동 종 로 1 가 공 평 동 관 훈 동 견 지 동 권 농 동 운 니 동 익 선 동 경 문 동	와룡동중 와룡동 1 번지를 제외한 지역

구명	동사무소명칭	법정동관할구역	
		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종로구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종로2가	
	삼청동	관판동 삼청동 안국동 소격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가회동	가회동 재계동 계동 원서동	
	종로3가동	훈점동 묘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종로3가	
	종로4,5 6가동	인의동 메지동 원남동 연지동 종로4가 효계동 종로5가	

구명	동사무소명칭	법정동관할구역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종로구		총로 6가	
	이화동	이화동 연건동 동송동	
	혜화동	혜화동 명륜동 1가 명륜동 2가 명륜동 4가	
	명륜3가동	명륜동 3가	와룡동 중 와룡동 1번지
	창신제 1동		창신동 중 24번지를 기점으로 산 6의 2를 경유 130의 2, 130의 31, 130의 10, 138의 11, 151번지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왕산로를 경계로 청계천에 이르는 이동지역
	창신제 2동		창신동 중 동대문을 기점으로 530번지에 이르는 왕산로를 지나 530번지에서 131의 3, 130의 10, 595의 4를 경유 596의 1, 610의 3, 615 및 622의 6에 이르는 이시지역
	창신제 3동		창신동 중 창신제 1,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승인제 1동		승인동 중 181번지의 141을 기점으로 178의 170, 72의 3을 경유 72의 1에서 창신동에 이르는 북측지역
	승인제 2동		승인동 중 승인제 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교남동	교남동 평송동 송월동 홍파동 교북동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한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중로구		행촌동	
	평창동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부악동	무악동	
	충신동	충신동	
중구	태평로1가 동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울지로1가	
		울지로2가	
		남대문로2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포동	
	소공동	소공동	
		남창동	
		북창동	
		태평로가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서소문동	
		정동	
		순화동	
		의주로1가	
		충정로1가	

구 명	동사 무 소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중 구	남대문로 5가동	양 동 남대문로 5 가 봉래동 1 가 봉래동 2 가	
	회 현 동	회현동 1 가 회현동 2 가 회현동 3 가	
	명 동	충무로 1 가 충무로 2 가 명 동 1 가 명 동 2 가 남산동 1 가 남산동 2 가 남산동 3 가 저 동 1 가	
	충무로 4, 5가동	충무로 4 가 충무로 5 가 인현동 2 가 예 관 동 목 정 동	
	필 동	필 동 1 가 필 동 2 가 필 동 3 가 남 학 동 주 자 동 에 장 동 충무로 3 가	
	장 충 동	장충동 1 가 장충동 2 가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광 회 동	광 회 동 1 가 광 회 동 2 가 쌍 립 동 을 지 로 6 가 을 지 로 7 가	
	을 지 로 3 , 4 , 5 가 동	을 지 로 3 가 을 지 로 4 가 을 지 로 5 가 주 교 동 방 산 동 오 장 동 입 정 동 산 립 동 초 동 인 현 동 1 가 저 동 2 가	
	신 당 제 1 동	홍 인 동 부 학 동	신 당 동 중 을 지 로 7 가 종 점을 기점으로 신 당 동 264 번지의 1 및 274의 2, 295의 27에 이르는 도로서측과 393의 38을 경유 장충동 1가 경계 동측지역
	신 당 제 2 동		신 당 동 중 390 번지 12 를 기점으로 353 번지에 이르는 도로를 연하여, 용산구 경계 서측과 399의 1에서 432 번지에 이르는 장충동 1, 2가 경계선 이동지역
	신 당 제 3 동		신 당 동 중 369 번지의 28을 기점으로 산 36의 84에 이르는 도로이동과 산 34의 104에서 금호경계서측지역
	신 당 제 4 동		신 당 동 중 294 번지의 22 를 기점으로 369 의 27이동지역과 산 17의 28을 경유 40의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관 할	관 할	관 할
	신당제 4 동	신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280	에서 산 34의 4에 이르는 금호동 2가와의 경계서측 지역
	신당제 5 동		신당동중	267의 1에서 294의 12(성동여자중고등학교)에 이르는 도로이동과 산 17의 1에서 110의 17에 이르는 서측지역
	신당제 6 동		신당동중	67번지의 73을 기점으로 62의 39 및 59의 1앞 도로를 따라 하왕십리동 경계까지의 지역과 67의 73에서 52의 15 및 54번지를 경유 산 17의 12에 이르는 북측지역
	신당제 7 동		신당동중	하왕십리동 서단접경으로부터 신당동 21의 7까지의 왕십리 이남지역과 21의 1을 기점으로 95의 5와 67의 75 및 58번지를 경유 상왕십리동과 하왕십리동 경계 서측지역
	황 학 동	황 학 동		
	중 립 동	중 립 동		의 주로 2가
만 리 동	만 리 동 1가		만 리 동 2가	
동 대 분 구	신 설 동	신 설 동	용두동중	점능천 이서지역으로서 용두동 254에서 122의 7에 이르는 신담로를 경계로한 이남지역
	용두제 1 동		용두동중	점능천 이북지역
	용두제 2 동		용두동중	용두 1동장 및 신철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제기제 1 동		제기동중	점능천 이북지역
	제기제 2 동		점능천	이북지역의 제기동중 제기 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 대 문 구	제기재 3동		제기동중 정능천 이서지역	
	전농제 1동		전농동중 567번지를 기점으로 558의 20, 558의 148, 558의 157, 384, 352, 325의 15, 310의 1, 299번지에 이르는 이남지역	
	전농제 2동		전농동중 191의 34를 기점으로 하여 이남도로를 따라 동 산 9, 126의 15 산 11, 209의 16을 경유 전농제 1동장 관할구역 경계 이서지역	
	전농제 3동		전농동중 25의 1을 기점으로 전농동 토 타리를 경유 150번지에 이르는 도로이 동지역	
	전농제 4동		전농동중 전농동 제 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담십리제 1동		담십리동중 224-1앞에서 476-72를 연하는 도로, 476-72에서 476-197, 478-17을 경유 479-2를 연하는 소방도로, 479-8, 146-5, 135, 181, 310-2, 272-20, 273-12, 173-4, 268-1까지의 소로 268-1에서 97의 1까지 연하는 도로를 경계로한 이북지역	
	담십리제 2동		담십리동중 산 2의 5 능선을 기점으로 산 2의 8, 산 12의 2, 3을 연결하는 능선과 49의 97, 40의 57, 40의 154, 30의 90 및 3, 21의 2, 277번지 까지를 연결하는 이서지역으로 하고 담십리동 277, 68의 1, 97의 2까지에 이르는 도로이동지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대문구	답십리제 3 동		답십리 동중 112 번지를 기점으로 240 번지 경유 청계천에 이르는 도로 이서지역과 답십리동 466, 547, 548 번지를 제외하고 465 의 1 및 463 의 14 앞 도로를 경계한 남측지역
	답십리제 4 동		답십리 동중 산 1 - 2 능선을 기점으로 산 2 - 9, 산 2 - 12, 산 2 - 2, 3 을 연결하는 능선과 9 - 19, 9 - 39, 25 - 20 까지를 연결하는 이동지역으로 하고 답십리동 24-27, 34, 2, 19, - 3 까지 이르는 이남지역
	답십리제 5 동		답십리 동중 답십리 제 1, 2, 3, 4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장안제 1 동		장안동중 173 부력을 기점으로 하여 30 m 도로를 경계로 한 7 부력에 이르는 이서지역
	장안제 2 동		장안동중 장안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청량리제 1 동		청량리 동중 181 의 301 호부터 서측에 이르는 연도 이남지역
	청량리제 2 동		청량리 동중 청량리 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회 기 동	회 기 동	
	휘 경 동	휘 경 동	
	이문제 1 동		이문동중 288 의 12 에서 경춘선에 이르는 도로남측과 258 의 50 을 기점으로 163 의 131, 163 의 80, 155, 116, 117 의 8 을 경유, 중랑천에 이르는 도로 북측을 경계로 한 청량리동 석관동간 이동지역
	이문제 2 동		이문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서측으로 하고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동대문구	이문재 2 동		255의 81을 기점으로 257의 290을 경유 290, 306의 17, 319의 17, 74, 321의 23, 321의 37을 지나 339의 5앞 도로를 잇는 서남지역
	이문재 3 동		이문재 1,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면목계 1 동		면목동중 91-69에서 558-21까지의 면목천 이동 및 558-21에서 501-4, 102-19, 74-4를 경유 484-1을 연하는 도로 서북지역
	면목계 2 동		면목동중 중량천변을 서측경계로 하고 면목동 131앞 면목천을 동측경계로 하고 148의 3, 193의 11앞 도로를 남측 경계로 한 지역
	면목계 3 동		면목동중 60-1에서 564-1(면목천)까지의 도로를 북측 경계로 하고 564-1에서, 607-6에 이르는 면목천을 서측 경계로 하며 607-6에서 537-1까지의 도로 및 산 48의 능선을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
면목계 4 동		면목동중 중량천을 서측 경계로 하고 면목동 673의 1, 353의 1, 364의 3앞 도로를 경계로 이남지역과 면목동 727의 5불기점으로 111의 4를 경유 1343의 6앞 도로를 남측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	
면목계 5 동		면목동중 중량천변 면목동 194-9를 기점으로 동측으로 15미터 도로를 따라 149-1에서 면목천변을 따라 남측으로 유수지 163번지에 이르는 이서지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동대문구	면목제 6 동		면목동중 72의 1에서 1217을 잇는 소야지천과 1217에서 413-3을 잇는 도로를 면목1동과 경계로 하고 413-3에서 57-8을 잇는 도로와 면목3동을 경계로 하는 이북지역	
	면목제 7 동		면목동중 면목제 1,2,3,4,5,6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봉제 1 동		상봉동중 117-3을 기점으로 74-1호에 이르는 망우로를 경계로한 이북지역	
	상봉제 2 동		상봉동중 상봉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중화제 1 동		중화동중 중방천변 388번지를 기점으로 동남측 243번지를 잇는 도로 및 243번지에서 276번지를 연하는 중앙배수를 경유 276번지에서 203번지의 1호를 잇는 도로 이북지역	
	중화제 2 동		중화동중 중화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북 동	북 동		
	망우제 1 동		망우동중 358-6에서 남측으로 15미터 도로를 지나 403-29에서 402-83을 경유 산57의 3을 연결하는 이북지역	
	망우제 2 동		망우동중 망우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 내 동	신 내 동			
성 동구	하 왕 십 리 제 1 동	상 왕 십 리 동	하왕십리동중 292번지 2에서 상왕십리동을 경계로 872번지 및 940번지를 연하는 도선동, 홍익동과의 경계 서북지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등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 동 구	하 왕 십 리 제 2 동			하왕십리동중 하왕십리 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도 선 동	홍 익 동 도 선 동		
	마 장 동	마 장 동		
	사 근 동	사 근 동		
	행 당 제 1 동			행당동중 191번지 3에서 331번지 도로를 연하는 이동지역
	행 당 제 2 동			행당동중 279번지를 기점으로 318번지 16 도로를 연하여 산 42번지 7까지의 도로 이북지역
	행 당 제 3 동			행당동중 행당제 1 동장, 행당제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응 봉 동	응 봉 동		
	금 호 1 가 동	금 호 동 1 가		
	금 호 2 가 동	금 호 동 2 가		
	금 호 3 가 동	금 호 동 3 가		
	금 호 4 가 동	금 호 동 4 가		
	옥 수 제 1 동			옥수동중 419번지에서 421번지의 113에 연하는 도로로부터 매봉산 능선을 따르는 도로 이북지역
	옥 수 제 2 동			옥수동중 옥수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성 수 1 가 동	성 수 동 1 가		
	성 수 2 가 제 1 동			성수동 2 가중 동 2 로 서측지역으로서 성수동 2 가 275번지 6에서 301번지 4에 연하는 도로 이남지역
	성 수 2 가 제 2 동			성수동 2 가중 동 2 로 이동지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 동 구	성 수 2 가 제 3 동			성수동2가중 성수2가 제1동장 및 성수2가 제2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화 양 동	화 양 동 모 진 동		
	송 정 동			송정동 및 군자동중 청계천 하류(중량천) 이동지역
	중곡제 1 동			중곡동중 341의7을 기점으로 34번지 1을 연결하는 8미터 도로와 34의1에서 서측으로 237번지1을 경유 동대문구(중량천)에 이르는 8미터도로 서남 지역
	중곡제 2 동			중곡동중 341의7을 기점으로 30번지1(국립정신병원)을 경유 동대문구 면목동 경계로 연하는 도로 이동지역
	중곡제 3 동			중곡동중 중곡제 1,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능 동			능동중 중량천 이동지역
	군 자 동	용 답 동		송정동, 능동, 군자동중 중량천하류 이서 지역
	구 의 동			구의동중 451번지의1에서 구의동203번지의2(광장동 경계)에 연하는 도로 이남지역
	광 장 동	광 장 동		구의동중 구의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자양제 1 동			자양동중 자양동로타리에서 잠실대교로 35미터 도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79부력 136번지에서 좌측에 이르는 70미터 도로를 따라 11부력 243번지를 경유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553-14 호 (성수동 2 가 경계) 에 이르는 도로 서북지역.
	자양제 2 동		자양동중 자양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성 북 구	성북제 1 동	성북동 1 가	성북동중 윤수교 동남지역
	성북제 2 동		성북동중 성북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동소문동	동소문동 1 가 동소문동 2 가 동소문동 3 가 동소문동 4 가	돈암동중 돈암국민학교앞을 기점으로 동구여상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
	삼선제 1 동	삼선동 1 가 삼선동 2 가	돈암동중 삼선동 2 가 경계 이서지역
	삼선제 2 동	삼선동 3 가	돈암동중 삼선동 2 가 경계 이동지역
	삼선제 3 동	삼선동 4 가 삼선동 5 가 동소문동 5 가	
	동선제 1 동	동선동 1 가 동선동 2 가 동선동 3 가	돈암동중 돈암현 이남지역
	동선제 2 동	동선동 4 가 동선동 5 가 동소문동 6 가 동소문동 7 가	
	돈암제 1 동		돈암동중 돈암현 이동지역으로 서로는 돈암동 45 번지와 31 번지 1 호가 합류되는 지역
	돈암제 2 동		돈암동중 동으로 돈암제 1 동장 관할 구역까지 서남으로는 성북제 1 동장 및 동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소문동장 관할 구역까지의 지역
	안 암 동	안암동 1 가 " 2 가 " 3 가 " 4 가 " 5 가	
	보문제 1 동	보문동 4 가 " 5 가 " 6 가 " 7 가	
	보문제 2 동	보문동 1 가 " 2 가 " 3 가	
	정능제 1 동		정능동중 아래랑고개길 동측지역과 송덕국민학교 동측도로 이동지역
	정능제 2 동		정능동중 송덕국민학교 동측도로를 북상 227 번지를 경유 410 번지 지적선을 따라 성저오리정계표 및 404 번지앞 도로를 경유 정능천을 남하 배밭골로 향하는 하천을 따라 650 번지앞 구거에서 산 87 번지 3 호 지적선과 일직선으로 연하는 지역과 아래랑고개길 이시지역
	정능제 3 동		정능동중 정능천 이시지역으로서 동남으로 정능 2 동장 관할 구역까지의 지역
	정능제 4 동		정능동중 정능제 1, 2, 3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길음제 1 동		길음동중 1076 번지에서 1166 번지에 이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청 북 구	길음제 1 동		르는 도로 이서지역중 1122번지 및 1190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남과 60번지 앞 구거에서 정능동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길음제 2 동		길음동중 성황당 고개에서 정능동에 이르는 소로 이남지역중 1076번지에서 1166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서의 지역으로 길음제 1 동장 관할 구역과의 경계 지역
	길음제 3 동		길음동중 길음제 1, 2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종암제 1 동		종암동중 고산로 이서지역
	종암제 2 동		종암동중 고산로 이동지역
	하월곡제 1 동		하월곡동중 장월교를 북상하여 62번지 앞 도로를 따라 하월곡동 산 2 번지와 경계가 되는 도로를 따라 북상, 신장 위로에서 서진, 미아삼거리를 경유 하월곡동 104의 40호까지 이르는 미아로 이남지역
	하월곡제 2 동		하월곡동중 동덕여대 북쪽 지적선과 구거를 연하여 57번지 앞 소로를 따라 북상 하월곡제 1 동장 관할구역과 접한 이남지역
	하월곡제 3 동		하월곡동중 76의 1호 앞 북개도로를 따라 77의 1호를 경유 제곡도로를 동진 산 2의 36호 앞 암석제곡을 경유 산 2의 1호 제곡을 따라 동진 상월곡동과 접하는 제곡 이북지역
하월곡제 4 동		하월곡동중 하월곡제 1, 2, 3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명	동사무소명칭	법정동관할구역	
		전치역관할	일부지역관할
성북구	상월곡동	상월곡동	
	장위계 1 동		장위동중 180 번지 1호 도봉구와의 구경계를 기점으로 197 의 12 호를 경유 198 의 40 호에 이르는 소로와 199 의 40 호에서 238 의 199 호를 경유 68 번지앞에 이르는 도로와 산 3 의 4 북측지점선과 연결되는 서북지역
	장위계 2 동		장위동중 237 의 286 호를 기점으로 북개도로를 따라 동진하다가 76 의 68 호를경유 남하하면서 91 의 1 호와 93 의 12 호, 55 의 27 호경유 45 번지 화랑로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남으로 화랑로를 경계로한 이북지역으로서 장위 1 동장 관할구역 경계선에 이르는 지역
	장위계 3 동		장위동중 제 1, 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석관계 1 동		석관동중 이문로와 화랑로를 경계로한 동남지역
	석관계 2 동		석관동중 석관계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도봉구	미아계 1 동		미아동중 삼양로 이서지역과 703 번지, 701 번지, 838 번지, 839 번지 미양국민학교 837 의 915, 837 의 1616 호, 837 의 1280 호, 837 의 1286 호, 837 의 1164 호, 837 의 1170 호, 837 의 1211, 837 의 1268 호에 이르는 삼양로지선도로 이북지역중 북으로 749 번지앞 도로를 따라 삼양국민학교정문 남쪽담장을 경계로 760 번지에서 837 번지에 이르는 세도로 이남지역.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도봉구	미아제 2 동		미아동중 수유국민학교에서 226번지의 49호까지 이르는 수유토지구획정리지구 경계선이서지역으로 남으로 미아제 1,8 동장 관할구역과 접하는 지역
	미아제 3 동		미아동중 산 25번지의 1호 지적선을 따라 134번지의 39호를경유 160번지 2호를 연하는 이동지역과 304번지의 8호에서 202번지로 연하는 이서지역중 남으로는 미아제 5 동장 관할구역, 서로는 미아제 2 동장, 미아제 8 동장 관할구역에 접하는 지역
	미아제 4 동		미아동중 미아삼거리를 기점으로 도봉로 이동지역중 산 25번지의 2호 지적선에서 135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미아제 5 동		미아동중 도봉로 이서지역중 65의 2호와 688번지에 이르는 월곡천(북개도로) 이남지역과 삼양로 이동지역으로 남으로는 성북구 경계선 이북지역.
	미아제 6 동		미아동중 1268번지의 352호를 기점으로 1268번지의 158호 1268번지의 142호, 637번지, 670번지의 28호를 경유 689번지에 이르는 삼양로 이서지역으로 북으로는 미아제 3 지구 3부력 1호, 4부력 1호에 이르는 삼양로 지선도로로 미아제 1 동장 관할구역과 접하여 서단으로는 산 100번지의 1호에서 산 75번지 지적선에 이르는 지역
	미아제 7 동		미아동중 미아제 3 지구 5부력 1호, 8부력 4호 9부력 1호, 10부력 1호, 837번지의 1297호, 837번지의 1368호, 837번지의 1375호.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등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도봉구			837 번지의 1366 호, 837 번지의 1403 호, 837 번지의 1423 호를 경유 성북구 경계선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과 미아제 6 동장 관할 경계선 이서지역 및 성북구 경계선 이북 지역.
	미아제 8 동		미아동중 미아제 1, 2, 3, 4, 5, 6, 7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빈 제 1 동		빈동중 449 번지의 4 호에서 428 번지의 1 호에 이르는 도로 및 하천 이북지역.
	빈 제 2 동		빈동중 빈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수유제 1 동		수유동중 도봉로에서 화계사입구 (수유동 48 의 1 호) 도로 이남지역과 화계사앞에서 성북 구 정능동 경계선에 이르는 개곡 이남지역
	수유제 2 동		수유동중 279 번지를 기점으로 287 번지에서 우이천 지류를 따라 서진하여 542 번지에서 산 21번지 6 호까지 소로를 경유 산 75 번지의 1 호앞 하천을 따라 수유동과 우이동경계지점까지를 연하는 이남 지역
	수유제 3 동		수유동중 166 번지의 1 호앞에서 가오천을따 라 가오교까지의 이남지역과 삼양로 이동 지역 및 399 번지의 1 호에서 134 번지의 58 호에 이르는 도로와 134 번지의 58 호에서 2 번지의 8 호에 이르는 하천이북지역.
	수유제 4 동	우 이 동	수유동중 수유제 2 동장 관할구역 경계선 이북지역과 쌍문동중 쌍문동 309 번지 1 호에서 307 번지의 3 호로 연하는 도로와 방학 동, 도봉동과 접하는 이서지역
	수유제 5 동		수유동중 수유제 1, 2, 3, 4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비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도봉구	창 계 1 동		창동중 산 66 번지에서 창동 161 번지의 1 호에 이르는 도로 및 창동 산 107 번지의 3 호, 405 번지의 7 호, 408 번지의 1 호, 산 129 번지의 3 호, 산 153 번지, 산 137 번지의 4 호, 산 184 번지의 1 호, 산 184 번지의 2 호, 산 183 번지, 산 176 번지, 산 177 번지에 이르는 남측경계선을 연결하는 이북지역.
	창 계 2 동		창동중 창계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월 계 동	월 계 동	
	쌍문계 1 동		쌍문동중 산 139 번지의 1 호를 기점으로 310, 312, 315, 227, 산 248 번지의 1 호를 연하여 방학동과 접하는 소도로 서남지역과 북으로 산 307 번지의 3 호에서 산 309 번지의 1 호에 이르는 도로 이남지역
	쌍문계 2 동		쌍문동중 산 139 번지의 1 호를 기점으로 310, 312, 315, 227, 228 번지의 1 호를 연하여 방학동과 접하는 소도로 동북지역
	공 룡 동	공 룡 동 하 계 동	
	상계계 1 동		상계동중 855 번지의 8 호에서 산 128 번지앞 구거에 이르는 이북지역과 산 123 번지의 남측 지적선에서 산 135 번지, 산 136 번지, 산 143 번지와 북측 지적선을 경유 산 105 번지와 산 95 번지, 산 52 번지, 산 1 번지에 이르는 서북지역
	상계계 2 동		상계동중 855 번지의 8 에서 산 128 번지에 이르는 구거이남지역과 산 133 번지, 산 135 번지, 산 143 번지, 산 144 번지 이남지역중 127번지와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 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도봉구			산 186 번지 앞 당현천 서남측지역.
	상계제 3 동		상계동중 산 145 번지, 산 149 번지, 산 150 번지의 5 호, 동북지적선을 따라 당현천에 연하고, 당현천을 따라 북상 67 번지에서 68 번지 내 소도로를 경유 72 번지의 1 호, 72 번지의 3 호, 북단 지적선을 경유 산 159 번지를 연하는 이남지역
	상계제 4 동		상계동중 상계제 1, 2,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중 계 동	중 계 동	
	도봉제 1 동		도봉동중 도봉로 이서지역
	도봉제 2 동		도봉동중 도봉로 이동지역
	방 학 동	방 학 동	
서대문구	충 정 로 동	충 정 로 2 가 3 가 합 동 미 근 동	
	천 연 동	냉 천 동 천 연 동 옥 천 동 영 천 동	
	현 저 동	현 저 동	
	북아현제 1 동		북아현동중 126 의 26 을 기점으로 동 136 의 16 을 경유 한성고등학교에 이르는 곡선도로 동남지역
	북아현제 2 동		북아현동중 북아현제 1,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북아현제 3 동		북아현동중 경의선철로 이북지역.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서대 문구	대 신 동	대 신 동 대 현 동 대 신 존 동 봉 원 동	
	창 천 동	창 천 동	
	연희제 1 동		연희동중 218 의 21 을 기점으로 간선도로를 경계로 동 134 의 18 을 경유 홍남교 서측을 향한 간선도로로 포위된 이서지역
	연희제 2 동		연희동중 연희제 1,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연희제 3 동		홍연교 동측을 기점으로 연희동 393 의 58 을 중점으로 하는 간선도로 이동지역
	홍제제 1 동		홍제동중 산 33 번지 서측을 기점으로 동 156 의 3 을 경유 동 152 의 3 을 경유 홍제 교 서측까지의 지역
	홍제제 2 동		홍제동중 산 33 번지의 동측을 기점으로 동 151 의 2 를 경유 동 43 의 79 호 무악재에 이르는 간선도로 이서지역
	홍제제 3 동		홍제동중 홍제제 1, 2, 4 동장 관할구역을 제 외한 전역
	홍제제 4 동		홍제동중 40 의 149 무악재로부터 174 의 56 을 경유 구거부지에 이르는 이동지역
	홍은제 1 동		홍은동중 홍제천에 접한 24 번지를 기점으 로 24 번지의 24 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산 1 번지 17, 산 1 번지의 94 를 연결한 선의 이서부터 홍제교 동측부터 녹번동교개에 이 르는 간선도로 이동까지의 지역.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관	관	구	역
	소 명 칭	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서 대 문 구	홍은제 2 동			홍은동중 9번지의 339를 기점으로 8번지의 685간 소하천을 지나 산1번지의 72와 산1번지의 68의 경계선을 따라 산1번지의 69와 불광동 경계에 이르는 이서지역.						
	홍은제 3 동			홍은동중 홍제교에서 간선도로를 따라 녹빈동 고개에 이르는 이서지역						
	홍은제 4 동			홍은동중 홍은동 제 1, 2,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남가좌제 1 동			남가좌동중 115의 33을 기점으로 간선도로를 경계로 186의 5를 경유 241의 15를 종점으로 하는 서남측지역						
	남가좌제 2 동			남가좌동중 남가좌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북가좌제 1 동			북가좌동중 114의 19를 기점으로 하여 역촌추가지역 부력 259호를 연하는 간선도로 서남지역						
	북가좌제 2 동			북가좌동중 북가좌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은평구	수 색 동	수 색 동								
	녹 빈 동	녹 빈 동								
	불광제 1 동			불광동중 285번지를 기점으로한 능선과 기독교 수양관을 지나 구기동 경계까지의 이동지역						
	불광제 2 동			불광동중 불광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갈 현 동			갈현동중 462번지의 1을 기점으로 523번지의 18에 이르는 북개도로를 지나 산130번지의 4와 산 131번지의 1을 연결하는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경계선 동북지역.	
	구 산 동	구 산 동	갈현동중 갈현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대 조 동	대 조 동		
	응암제 1 동		응암동중 산 7번지의 5 능선에서 영락중학교 후문 소로를 따라 107번지 응암로를 경유 119번지 주유소에서 불광천까지의 이동지역	
	응암제 2 동		응암동중 244번지 시민아파트에서 응암국민학교 후편 소로를 따라 323번지 응암로를 경유 불광천까지의 이서지역	
	응암제 3 동		응암동중 응암제 1, 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역 촌 동	역 촌 동		
	신 사 동		신사동중 82번지를 기점으로 하여 39의 7호를 경유 산 79번지와 산 76번지사이의 능선을 따라 산 93번지의 시계에 이르는 경제의 이북지역	
	증 산 동	증 산 동	신사동중 신사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진 관 내 동	진 관 내 동		
		구 파 발 동		
	진 관 외 동	진 관 외 동		
마포구	아현제 1 동		아현동중 마포로 이동지역	
	아현제 2 동		아현동중 마포로 이서지역으로서 아현동 267의 5를 기점으로 282의 2동 339의 3동 341의 2와 동 350의 1을 경유 동 350의 4에 이르는 도로 이북지역	
	아현제 3 동		아현동중 아현제 1, 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공덕제 1 동		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 105의 51을 경유 동 118의 1에 이르는 도로이동지역	
	공덕제 2 동		공덕동중 공덕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 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신공덕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도화동중 16의 5를 기점으로 동175의1, 동176의1, 동179의12, 동341, 동347의2, 동347의115, 동399의3, 동376의62, 동376의198, 동376의234, 동376의185를 경유 동376의143에 이르는 도로 이북 지역
	도화제2동		도화동중 도화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용강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대흥동	
	염리동	염리동	
	노고산동	노고산동	
	신수동	신수동 현석동 구수동	
	창진동	창진동	
	상수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당인동 하수동	
	서교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합정동	망원동중 387의2를 기점으로 동391-1에 이르는 구거와 동117의1 망원제방을 경유 한강 수면규계에 직선으로 이르는 이동지역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봉 산 구	망 원 동		망원동중 합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연 남 동	연 남 동	
	성산제1동		성산동중 119번지를 기점으로 북 185 동 354 의 2 에 이르는 사천 이동지역
	성산제2동	중 동	성산동중 성산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상 암 농	상 암 농	
	후 암 동	후 암 동	
		도 농 2 가	
	용산 2 가 동	용 산 동 2 가	
		용 산 동 4 가	
	남 영 농	갈 율 동	
		동 자 농	
		남 영 동	
		용산동 1 가	
		도 동 1 가	
	청 파제 1 동	서 계 동	
	청 파동 1 가		
청 파제 2 동	청 파동 2 가		
	청 파동 3 가		
원 효 로	원 효로 1 가		
제 1 동	원 효로 2 가		
원 효 로	신 창 동		
제 2 동	산 친 동		
	청 암 동		
	원 효로 3 가		
	원 효로 4 가		
효 창 동	효 창 동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용 문 동	도 원 동 용 문 동	
	한 강 로 제 1 동	문 배 농 신 계 동 한강로 1가	
	한 강 로 제 2 동	한강로 2가 용산동 3가 용산동 5가	
	한 강 로 제 3 동	한강로 3가	
	이 촌 제 1 동		이촌동중 제 1 한강교에 연하는 지적선 이농지역
	이 촌 제 2 동		이촌동중 이촌제 1 농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이 태 원 제 1 동		이태원동중 201번지 152,190,453,455의 39에서 한남로에 이르는 이남지역
	이 태 원 제 2 동		이태원동중 이태원제 1 농장 관할구역을 제외 한 전역
	한 남 제 1 동		한남동중 산 8의 30, 산 8의 29, 707의 40호 와 산 8의 35, 산 8의 15 707의 31호를 사 이로 하는 지적선을 따라 30m도로를 횡단 704의 3에서 76의 6에 이르는 도로 와 76의 6에서 657의 121에 이르는 도 로 및 653의 121에 653의 91을 경유 768의 27호에 이르는 소로를 경계로 하는 이남지역
	한 남 제 2 동		한남동중 한남제 1 농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진 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서빙고동	농빙고동 서빙고동 주성동 용산동 6가	
	보광동	보광동	
영등포구	영등포 제 1 동		영등포동중 영등포제 2, 3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영등포 제 2 동	영등포동 1가 영등포동 2가 영등포동 3가 영등포동 4가 영등포동 5가	영등포동중 29의 68 및 94의 20 도로 경계 이동지역
	영등포 제 3 동	영등포동 6가 영등포동 7가 영등포동 8가	영등포동중 29의 68앞에서 94의 70 도로 경계 이서 지역
	여의동	여의도동	
	당산제 1 동	당산동 1가 당산동 2가 당산동 3가	
	당산제 2 동	당산동 4가 당산동 5가 당산동 6가 당산동	
	도림제 1 동		도림동중 160번지 앞에서 산 32번지에 이르는 소능신 이동지역
	도림제 2 동		도림동중 도림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 한 전역
	문래제 1 동	문래동 1가 문래동 2가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농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문래동 3 가	
	문래제 2 동	문래동 4 가 문래동 5 가 문래동 6 가	
	양평제 1 동	양평동 1 가 양평동 2 가	
	양평제 2 동	양평동 3 가 양평동 4 가 양평동 5 가 양평동 6 가 양 화 농	
	신길제 1 동		신길동중 95 번지에서 우신국민학교를 연하는 도로 이남의 지역중 신길동 160 , 193, 202 번지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 및 경인가도 이북지역
	신길제 2 동		신길동중 95 번지에서 우신국민학교를 연하는 도로 이북지역중 신길제 1 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길제 3 동		신길동중 경수도로 이서지역중 신길동 253의 20호를 기점으로 330의 19, 330의 18, 330의 6, 329의 119, 329의 31, 336의 2, 326의 55, 342의 43, 342의 91, 342의 49, 342의 69, 347의 65, 347의 6, 374 번지에 연하는 이북지역
	신길제 4 동		신길동중 221 번지를 기점으로 경수도로에 연하는 223, 233, 235, 249 에 연하는 이동지역중 신길제 1, 2 동장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 명	동 사 무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소 명 칭	전 지역 관 할	일 부 지 역 관 할
	신길제 5 동		신길동중 경수도로 이서지역의 신길동 253 의 35 를 기점으로 331,329 의 22,28, 29,30,32,33 호 336,342 의 48 호 도로 를 경유. 342 의 134 호 355,393,394, 355,379,380,375 번지에 연하는 이남지역.
	신길제 6 동		신길동중 435 번지를 기점으로 432,429, 210 의 5,215 의 1,239,240,241,244,245 274,272,271,250 의 16,252 의 77,253 의 205,236 의 278,269,291,256 의 102,163, 156 에 연하는 이남지역으로서 시중로 이 동지역
	신길제 7 동		신길동중 신길제 1,2,3,4,5,6 동장의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도림동		신도림동중 대림제 1,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대림제 1 동		신도림동중 751 번지의 1호를 기점으로 826,862,1064 에 연하는 도시계획도로 이 동지역
	대림제 2 동		신도림동중 751-1을 기점으로 826,862, 1064 번지에 연하는 도시계획도로 서부지 역으로서 도림천이 경부선과 접하는 지점 까지의 이 동지역
	구로제 1 동		구로동중 407 번지를 기점으로 410,411, 415에서 409,461,487,486,490,492, 500,489,580 번지로 연하는 도로,구로 지하 보차도를 통과 585,602,603 의 1번 지에 이르는 경인국도 이서지역
	구로제 2 동		구로동중 구로제 1,5 동장 관할경계의 이 남지역중 구로동 109,319,318,325,329,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730,729의 도로를 따라 808 번지에 연하는 이서 지역
	구로제 3 동		구로동중 801 번지를 기점으로 309 번지에 연하는 도로를 따라 169,145,146,152,153 에 이르는 이남지역
	구로제 4 동		구로동중 805-21 을 기점으로 313 을 연하는 도로와 313 에서 327,764,742,741,734,731 에 연하는 도로 이서 지역으로서 구로제 2 동장 관할 경계 이동지역
	구로제 5 동		구로동중 417 번지를 기점으로 420,425,424,447,446,434,435,433,436,103,104,97,96,104,114,94,93,73 에 연하는 이북 지역으로서 구로제 1 동장 관할 이동지역 전역
	구로제 6 동		구로동중 구로제 1,2,3,4,5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가 리 봉 제 1 동		가리봉동중 89 의 68 을 기점으로 2 부력 90,91,92,93, 5부력 78,76 에서 남부순환 제 2 봉단 진입도로를 횡단, 11 부력 154, 152,155,156, 12 부력 200,201,203, 17부력 205,243,244,242, 18 부력 241,69부력 230,69,235,231, 75 부력 산 72, 산 66, 74 부력 223,74, 산 72,105 부력 222, 218 산 75,220,106 부력 산 77,314,182,307 의 가를 연하는 도로 이동지역
	가 리 봉 제 2 동		가리봉동중 가리봉 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독산제 1 동		독산동중 경수국도 이서지역
	독산제 2 동		독산동중 경수국도 이동지역으로서 시용토지구 획 정리지구 99 부력 280 의 6 을 기점으로 94 부력 265 를 경유 92부력에 연하는 8 m 도로와 산 112, 산 114, 산 115 에 이르는 이남지역

구 명	동 사 무 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 지역 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독산제 3 동		독산동중 독산제 1,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 한 전역
	시흥제 1 동		시흥동중 산 108 번지의 1 을 기점으로 산 108 의 8 , 산 109 의 2 , 219 의 1 , 202, 189 번지를 연하는 190 의 3 에서 311 에 이르는 하천 과 205, 455, 444 의 1 을 경유 경수국도를 횡단 산 35 의 3, 산 34, 산 38, 산 41 의 1 에 이르는 이북지역
	시흥제 2 동		시흥동중 산 112 번지를 기점으로 산 116, 산 115, 336, 183, 186, 203, 200, 220, 248, 245, 250, 252, 271, 산 84, 산 91, 산 93 에 연하는 이동지역
	시흥제 3 동		시흥동중 시흥제 1,2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 한 전역
	고척제 1 동		고척동중 145 의 64 를 기점으로 145 의 63, 58, 산 31 의 2, 산 34 의 1, 산 33, 152 의 13, 14, 산 36 의 1, 172 의 47, 44, 2, 173 의 2, 174 의 6, 5, 4, 3, 2, 1, 산 43, 42 에 연하는 하천 및 도로를 경계로한 동남지역
	고척제 2 동		고척동중 고척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개봉제 1 동		개봉동중 417 번지를 기점으로 416, 182, 181, 206, 208 에서 개봉도로를 횡단 353, 210, 215, 216, 217, 산 21, 산 22, 240 에 연 하는 경인선(철도) 이북지역
	개봉제 2 동		개봉동중 개봉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오류제 1 동	궁 수 동	오류동중 242 번지를 기점으로 141, 140, 65, 77, 78, 79 에 연하는 이북지역
	오류제 2 동	천 왕 동	오류동중 오류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관악구	노량진 제 1 동	천 왕 동	노량진동중 16 번지의 1 에서 노량진동-상도 동간 도로를 경유 231 번지의 4 에서 232 번 지의 118 에 이르는 능선 이북지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노량진제2동		노량진동중 노량진제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상도제1동	상도제1동	상도동중 산 159번지의 78에서 능선을 따라 산 64번지의 봉천동 경계지점에 이르는 이동지역
	상도제2동		상도동중 356번지의 142를 기점으로 356번지의 32, 361번지의 56, 187번지 197, 200, 264, 211번지를 경계로 215번지에서 봉천동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
	상도제3동		상도동중 356-221에서 356의 193을 경유 187번지까지 도로를 따라 187에서 325의 10에 이르는 신림로를 경유 325의 10에서 259의 35로 연결되는 도로를 경유 279-429로 연결되는 도로지점에서 산 75번지와 산 67번지사이 능선에서지역
	상도제4동		상도동중 상도제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봉천본동		봉천동중 산 102번지의 1을 기점으로 산 103번지 능선을 따라 634번지 앞 도로를 경유 656번지까지의 도로 이동지역 및 산 102번지의 1을 기점으로 산 101번지의 98앞 도로를 따라 787, 488번지를 경유 501번지앞 도로를 가로질러 502의 5에서 512의 26앞 봉천천을 따라 656번지까지에 이르는이북지역
	봉천제1동		봉천동중 산 102번지의 1을 기점으로 산 103번지 앞 능선을 따라 634번지앞 도로를 경유 656번지까지의 도로에서 봉천천을 따라 737번지앞 신대방동 경계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지점 까지의 시북지역
	봉천제 2 동		봉천동중 7의 143 봉천동고개를 기점으로 하여 봉천천까지에 이르는 봉천로와 439-12에서 502-6에 이르는 봉천천의 서북 지역으로서 봉천본동장 및 봉천 5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봉천제 3 동		봉천동중 1번지의 242를 기점으로 봉천로를 따라 37번지의 14앞 도로에서 산 98번지 사당동 경계지점까지의 도로 이북 지역
	봉천제 4 동		봉천동중 528의 1호를 기점으로 봉천천을 따라 상봉교에서 남부순환도로 4거리를 거쳐 서울대학교 진입로에 이르는 봉천동 산 178의 1호에서 선림동 경계능선을 거쳐 636의 3호, 산 174의 12호, 185호에서 8미터도로를 경계로하여 산 174의 84호, 83호를 경유 남부순환도로를 횡단 528의 1호에 이르는 지역
	봉천제 5 동		봉천동중 산 101번지의 9를 기점으로 산 100의 1능선을 따라 다시 466번지에서 464의 4앞 도로를 경계로 496번지까지의 봉천 본동과 경계로한 이북지역
	봉천제 6 동		봉천동중 37의 35를 기점으로 봉천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 4거리에서 다시 남부순환도로를 경계로 사당동경계지점에서 봉천제 3동경계까지의 이북지역
	봉천제 7 동		봉천동중 봉천본동 및 봉천제 1, 2, 3, 4, 5, 6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봉천제 8 동		봉천동중 612번지 2호를 기점으로 봉천천을 따라 봉천동 526에서 8미터 도로를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청계로 남부순환도로를 횡단 산 174의 82호, 114호, 13호, 29호를 경유하여 신림동 경계에 이르는 지역	
	본 동	본 동		
	혹석제 1동		혹석동중 산 79번지 능선으로 부터 혹석동 수문에 이르는 구거복개 도로 이서 지역	
	혹석제 2동		혹석동중 산 79번지 능선과 5번지 이동 및 혹석동 수문에 이르는 구거 이남지역	
	혹석제 3동		혹석동중 혹석제 1, 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동 작 동	동 작 동		
	반배제 1동		반배동중 반배동 412번지(대)를 기점으로 25미터 도로를 따라 416의 2호, 106번지를 경유, 40미터 도로를 횡단 하여 80번지를 경유, 산 17의 16, 산 17의 4를 지나 강남구 경계선에 이르는 이북지역	
	반배제 2동		반배동중 반배제 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당제 1동		사당동중 산 55번지를 기점으로 사당동 303의 23호, 449의 1호 437, 383의 23호, 384의 15호 708의 418호로 연결되는 도로를 지나 사당동 708의 292호를 경유 반배동 경계선에 이르는 도로 동남지역	
	사당제 2동		사당동중 북쪽 동작동 경계지점인 사당동 산 12번지를 기점으로 64의 52앞 도로를 경유 95번지의 21호앞 하천을 따라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88번지의 4호에서 사당로를 가로질러 9번지의 45앞 도로와 3번지의 42호, 13번지의 29호, 5번지의 79호, 708번지의 21호에 이르는 이남지역과 사당3동 경계선 남북지역
	사당제 3 동		사당동중 산 32의 1호를 기점으로 산 31의 1에 이르는 도로를 따라 197의 1호에서 248, 251, 708의 305호를 거쳐 150번지의 10호에 이르는 이북지역과 130번지의 1호에서 하천을 따라 141의 54, 141의 32지점을 경유 산 18번지와 산 17번지 사이를 경계로 산 21의 1호와 산 12번지 사이를 경계하여 동작동 경계지점 이서지역
	사당제 4 동		사당동중 북으로 동작동과 망배동을 경계로 사당동 산 12번지와 산 11번지 사이 능선을 경계로 하여 산 10의 5호 산능선을 따라 95의 35도로를 경유 96의 17호앞 하천을 따라 88번지의 3, 4를 거쳐 사당로를 가로질러 9번지의 45앞 도로와 13번지의 42, 13번지의 29호, 5번지의 79호, 708의 21호에 이르는 이북지역
	사당제 5 동		사당동중 사당제 1, 2, 3, 4동장 관할구역울 제외한 전역
	대 방 동	대 방 동	
	신대방제 1 동		신대방동중 683번지 도림교를 기점으로 560번지 경수국도 3거리에서 대방로를 따라 492번지를 경유, 492의 137호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와 475번지에 이르는 이남지역과 475번지 도로를 따라 대방여중 신생원호 아파트쪽 박골에 이르는 소방도로를 따라 공군사관학교담을 따라가는 산 150의 1, 470, 471, 산 145번지 능선을 넘어 640번지앞 문창국민 학교에 이르는 이서지역과 640번지앞 도림천 제방을 따라 683번지 도림교에 이르는 이북지역
		신대방제 2 동	신대방동중 신대방 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림제 1 동	신림동중 산 169번지 봉천동 경계지점의 남부순환도로를 기점으로 189의 1호까지 이르는 남부순환도로와 산 125번지의 1호까지의 능선을 따라 다시 산 159번지의 3, 산 160, 161의 5, 6호 능선을 따라 408번지의 3에서 다시 94의 189에 이르는 도로에서 94의 156을 경유 산 63의 1 봉천동 경계까지의 지역
		신림제 2 동	신림동중 산 153번지를 기점으로 산 156번지의 능선을 따라 394번지를 거쳐 다시 271번지 소하천을 따라 277의 1을 경유 산 65의 1 능선을 따라 254, 산 61의 1을 거쳐 산 56의 2호 안양시 경계지점까지의 이두지역
		신림제 3 동	신림동중 산 191의 5호를 기점으로 하여 산 197의 2, 산 200, 산 197의 1능선을 따라 산 202의 1에 이르는 20미터 도로를 경유한 이남지역과 독산동 경계를 경유 산 117의 1과 산 117의 2사이 능선을 경유

구 명	두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산108의1를 포함한 산111의2, 711의57를 경유 711의30, 711의66, 637의4에서 653의3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산90번지 능선을 경유하여 산131 산132 산133의1, 산158 125의1, 산159의3, 산124의1 능선을 따라 산191의5에 연결된 일원의 포위된 지역
	신림제4동		신림동중 산191의5호를 기점으로 신림제1동, 5동 경계 이서지역중, 산197의2호 산200, 산197의1호능선을 따라 585번지의3호를 경유 586의7호에서 북쪽으로 8미터 도로를 따라 남부순환 도로를 횡단하여 도림천에 이르는 지역
	신림제5동		신림동중 321부력7번지를 기점으로 봉천천을 따라 다시 23번지의1호앞 신림천을 따라 남부순환도로를 경계하여 신림동 321.BL7번지 지점까지의 포위된 지역
	신림제6동		신림동중 산153번지를 기점으로 401의22를 거쳐 산56과 397번지사이를 경계로 394지점에서 신림천을 가로질러 271번지까지 하천을 따라 다시 남쪽 소하천을 따라 255의106을 거쳐 산65의2, 경계능선을 거쳐 산62, 산61의1, 산59, 산56을 지나 경기도 경계지점 이서지역 및 신림3, 7동 경계 이동지역
	신림제7동		신림제1, 2, 3, 4, 5, 6, 8동장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림제8동		신림동중 765의3호를 기점으로 산201의2호 지점과 독산동 경계에서 산203의2호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3호앞을지나 780번지의 17호에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경수국도 교차지점에서 도립교까지 이르는 이북지역
강남구	신 사 동		신사동, 압구정동, 학동중 강남대로와 남3로 도산로와 한강으로 포위된 지역
	논 현 동		논현동, 신사동, 학동, 청담동, 삼성동, 반포동 서초동중 강남대로와 남3로 도산로와 봉은로로 포위된 지역
	청 담 동		청담동, 압구정동, 학동중 남3로와 학로와 한강으로 포위된 지역
	삼 성 동	대 치 동	삼성동, 청담동, 도곡동중 남3로와 탄천, 학로와 역삼로로 포위된 지역
	역 삼 동		역삼동, 도곡동, 논현동, 삼성동, 서초동중 강남대로와 남3로, 봉은로와 역삼로로 포위된 지역
	도 곡 동	개 포 동 포 이 동	도곡동, 역삼동, 서초동중 역삼로와 남측의 역삼동, 도곡동전역과 서초동중 강남대로와 역삼로로 포위된 이동지역
	잠 원 동	잠 원 동	반포동중 반포대로 이동지역으로서 잠원 2로 이북지역과 신사동중 강남대로 이서지역
	반포제 1 동		반포동중 반포대로 이동 및 잠원 2로 이남 지역으로 논현동중, 서초동중 광희구역을 제외한 전역과 서초동중 1지구 1공구 74, 75, 76, 77, 79, 80, 81부력
	반포제 2 동		반포동중 한강 중심선을 기점으로 산 41의1에 이르는 반포대로 이서지역
서 초 동		서초동, 역삼동중 역삼동중, 도곡동중, 논현동중, 광희구역을 제외한 지역 및 반포동중 동작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접하는 점을 기점으로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역관할	일 부 지 역 관 할
				봉은토를 연하는 동작로 이남지역
	양 재 동	양 재 동 우 면 동 원 지 동		
	내 곡 동	내 곡 동 엄 곡 동 신 원 동		
	세 곡 동	세 곡 동 자 곡 동 울 현 동		
	일 원 동	일 원 동 수 서 동		
강동구	잠실제 1 동			잠실동 및 신천동중 잠실 2, 3, 4, 5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잠실제 2 동			잠실 중밀도 2 단지 일원
	잠실제 3 동			잠실동중 고밀도지구 1부력 동남우로부터 중밀도지구 2부력 서남우까지의 50m 도로 이남 및 중밀도지구 3부력 남단과 저밀도지구 12부력 서남우까지 이르는 25m 도로로 포위된 지역
	잠실제 4 동			잠실동 및 신천동중 송파트 이동지역 및 뱃이동장 관할구역중 이동 439번지에 이르는 성내천제방 동 408번지에서 391번지를 경유 461번지 (잠실동경계)에 이르는 40m 도로의 서측전역
	잠실제 5 동			잠실고밀도 1 단지 일원
	명 일 동	명 일 동 고 덕 동		
	하 일 동	상 일 동 하 일 동		

구명	동사무소 명칭		법정동관할구역		
			진지역과할	일부지역과할	
상지구	길 동	길촌 동			
	암사제 1 동		암사동중 536-2 불기점으로 94에 이르는 25m 도로이동지역		
	암사제 2 동		암사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성내 동	성내 동			
	풍남 동	풍남 동			
	천호제 1 동		천호동중 412번지불기점으로 동 407번지불경유하여 동 315번지에 이르는 천호로 동남측 지역		
	천호제 2 동		천호제 1 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송파 동	송파 동			
	반이 동	반이 동	파촌전락정지	동동동동동동동동	
			밤이금여	동동동동동동동동	
	기여 동	기여 동			
	엄창 동	엄창 동	엄창	동	북동중 138가정 135,271의 5 384의 4가에 인하는 하천 이북지역과 북동 384의 4가에 시 410의 4나에 이르는 도로 이북지역
			엄창	동	북동중 엄창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목 동	목 동			
	등촌 동	등촌 동			
	화곡제 1 동		화곡동중 330을 기점으로 63, 380, 381 402에 인하는 이남 지역과 화곡동 401의 1부 터 591의 28나에 이르는 도로 경계 이시지역		
	화곡제 2 동		화곡동중 산162의 1을 기점으로 산143의 2410 산22의 1에 인하는 이남 지역과 화곡동 산162의 1 부터 591의 6마에 인하는 도로 경계 이동지역		
화곡분동		화곡동중 화곡1, 2, 3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구 명	동사무소 명 칭	법 정 동 관 할 구 역	
		전지연관할	일 부 지 연 관 할
	화곡제3동		화곡동중 165부력을 기점으로 화곡로를 따라 남부순환도로에 연하는 398부력을 경계로한 서북지역
	신월제1동		신월동중 591-6나를 기점으로하여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한 신월동산 산 79번지 서단을 연결하는 이북지역
	신월제2동		신월1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가 양 동	가 양 동 마 곡 동	
	말 산 동	내 발 산 동 외 발 산 동	
	공 항 동	공 항 동	
	반화제1동		반화동중 614-64를 기점으로 249-20, 569-8, 481-5, 498-4, 산 88-2에 이르는 도로 동북지역
	반화제2동	개 화 동	반화동중 반화제1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과 해 동	과 해 동 오 곡 동 오 쇠 동	
	신정제1동		신정동중 222의1을 기점으로 235,67의1, 614의1, 583의1, 549의2, 553의3, 498의8 경인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20-2부력의 20의2가 464의3나 20-1부력, 464의1, 464의1,2,23-1부력의 420의6나 24부력 429.430의1.3번지에 연하는 남성수로의 이동 지역으로서 신정 제2동장 관할 구역을 제외한 전역
	신정제2동		신정동중 221번지를 기점으로 248.249.253 255.263의1.3.269.261의11.9.8.7.6.5.1. 310.308.125의3 304.300의6.5.4.3.2.1 79의13.12.11.10.9.8.7.6.5.4.3.2.1에 연하는 이동지역
	신정제3동		신정동중 신정제1, 2동장이 관할하는 구역을 제외한 전역

규 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 처분 규칙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 인

◎ 서울특별시 규칙제 1816 호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처분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운전면허 점수제 행정 처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행함으로써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여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운전하는 자로서 도로 교통법 또는 동법에 의한 지시 명령을 위반하여 교통경찰관으로부터 교통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교부 받은자와 즉결심판의 출두 지시서를 교부 받은자 및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배점기준) 교통법규 위반행위별 점수배점은 별표 3 및 4의 기준에 의한다.

제 4 조 (배점기간및방법) 위반점수에 대한 배점은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되 1년간을 한도로 취소처분 점수 (121 점) 에 도달할 때까지 위반시 마다 해당 점수를 누산한다.

제 5 조 (처분구분) ① 이 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면허행정처분중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서울특별시장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이 효력 정지 처분은 경찰서장이 한다.

제 6 조 (면허행정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1. 별표 2에 의한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1년에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한 위반 점수가 121점에 도달하였을 때

②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한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

2. 법원출두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정지 기간중 출두하여 즉심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즉일로 정지처분을 철회한다.

3. 처분기준의 한계는 별표 5에 의한다.

제 7 조 (교통단속) ① 교통법규 위반자
 자중 벌표 1 즉심회부 항목, 벌표 3 면
 허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항목 및
 벌표 4 교통사고 항목 이외의 위반행
 위에 대하여는 범칙금 통고서만 발
 부하고 면허증을 현지에서 반환한다.
 ② 교통법규 위반자중 즉심회부 및
 면허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에 대하여는 면허증을 보관하고 출
 두지시시 및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다.
 ③ 단속현장에서 면허증을 반환할 때
 에는 " 범칙금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는 당해면허가 취소된다"
 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 운전기
 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면허증을 회수 보관한 때에는 위
 반행위에 해당하는 범칙금 및 벌과
 금등을 납부한 후 영수증 및 즉심
 행정 증명서를 서울시대 거주 운
 전자는 단속지 경찰서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교통순시원이 교통 범칙 행위적발
 보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면허증을
 회수 보관치 않고 단속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
 부 받도록한다. 다만, 범칙자가 경
 찰서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
 5 호 시식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⑥ 제 5 항에 의한 최고 요령은 제 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교통 순시원이 타시도 위반 차
 량 단속시는 교통 경찰관에게 인
 제하여 교통경찰관이 출두지시 및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한다.
 제 8 조 (단속업무처리) ①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리 대장은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 발급대장 " 과 "
 수리대장 " 을 따로 비치하고 적발
 보고서에 의거 대장마다 " 통고처분"
 과 " 즉심 " 으로 구분 매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중 주소지
 가 타시도 관할인 경우의 단속
 및 처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즉심회부 및 통고 처분 대상
 자 처리
 가. 즉심회부 및 면허 행정처분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
 여는 면허증과 출두 지시시
 및 교통 범칙자 적발 보고서
 를, 기타 통고처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리대장에 정리
 하고 단속익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 2 호 서
 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단속지 경찰서에서는 수납기
 관으로부터 영수필 통지서를 송부 받
 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게
 별지 제 3 호서식에의하여통보하여야한다

제 9 조 (행정처분의절차) ①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4에 의한 대상항목에 한하여 면허행정 처분 하되 범칙금 또는 벌과금을 납부하고 동 영수증서 및 즉심 형집행 증명서와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및 출두지시서를 회수하고 "영수증서" 및 "즉심형집행증명서"이면에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교부하여 행정처분 기간 증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행정처분이 완료되는날 면허증을 환부한다.

② 면허행정처분 실시는 운전자가 벌과금 및 범칙금을 납부하고 "즉심형집행증명서" 및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제시한 날로부터 가산하고 집행한다.

③ 행정처분 기간중에는 운전면허증을 보관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리대장 (발급대장 및 수리대장) 에 조치 상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범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는 납부 기일만료일부처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 기일만료일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즉결심판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일 또는 즉심 출두일 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서식 제 5호에 의한 최고서를 발부하고 그 사실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1차 최고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차 최고서의

같은 요령으로 대장에 기록하고 2차 최고후 10일이 경과하면 서식 제 6호에 의거 당해 면허취소를 시장에게 상신한다 (취소 상신일 기준은 범칙금 또는 벌과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⑥ 타시도 경찰서에서 이첩되어온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한후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처리대장" (수리대장) 에 접수 순으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⑦ 운전자의 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일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리대장" (발급대장과 수리대장) 을 확인하고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 대상항목 이외의 위반항목으로 이첩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범칙금 납부 여부를 최고진에 단속지 경찰서에 확인한후 최고 하여야 한다.

⑧ 범칙금 납부 기일 경과자가 최고에 의하여 출두하였을 때에는 (기간경과 1개월이내의 자에 한함) 도로교통법 제 86조에 의거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하여 즉심 처리하되 면허증을 회수 보관하였다가 "즉심 형집행 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면허증을 환부한다.

⑨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 처분 기준의

한계에 의하여 면허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10)경찰서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한 때는 처분 경과를 별지 제 7 호 서식에 의거 3 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시장은 전항에 의한 면허 행정 처분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3 일 이내에 운전면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 6 호 서식에 의한 면허취소 상신을 지시하여 보관품을 회수면허 취소처분을 하고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단속지 경찰서장은 교통 범칙자 및 교통 즉심 위반자가 별표 2 의 취소 처분 기준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교통 범칙금 및 교통 즉심 벌과금을 집행한 후 면허증을 회수 면허 취소 상신을 하여야 한다.

13)시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경찰서장에게 하달하고 취소자에게 취소 사실을 제 8 호 서식에 의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행정처분의 통지) 위반별

배점수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는 즉심형집행 증명서 및 교통 범칙금 영수증서 이면에 행정 처분 사항을 기록하여 본인에게 교부하므로서 통지한 것으로 가름한다.

제 11 조 (보관물의 반환)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범규 위반 운전자가 벌과금을 납부하고 즉심형집행 증명서 및 교통범칙금 영수증서를 제출 할 때에는 지체없이 보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 만료일 12:00 이후에 반환한다.

제 12 조 (취소 처분된 면허증의 처리)

①취소처분한 운전면허는 별지 제 9 호의 서식에 의한 "실효 면허증 수배대상"한 비치하고 기록 정리한다.

②미 회수된 면허증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 면허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에 의한 미회수된 면허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에 면허증 회수 소재수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경찰서에서는 관할 파출소에 소재 수사를 하명하여 면허증을 회수 통보하여야 한다.

(4)경찰서장은 실효 면허증을 회수한 때에는 면허증을 첨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교통과 면허 1, 2계장은 적성검사시 실효 면허증을 회수하고 결과를 경찰서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제 13 조 (대장비치) 경찰국 및 경찰서에서는 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및 시식을 비치하여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고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 1. 교통법규 위반자 처리대장 시식 제 1 호 경찰서
- 2. 교통법규 위반운전자 단속 이첩서식 제 2 호, 경찰서
- 3. 범칙금 영수필 통보 이첩서식

제 3 호 경찰서

4. 범칙금 미납자 통보 이첩서식 제 4 호 경찰서

5. 범칙금 납부 최고시 이첩서식 제 5 호 경찰서

6. 운전면허 취소 상신 서식 제 6 호 경찰서

7.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 보고 서식 제 7 호 경찰서

8.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정서 서식 제 8 호 경찰국

9. 실효면허증 수배대장 시식 제 9 호 경찰국, 경찰서

부 칙

이 규칙은 197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내 용
1	주차방법위반차량 조치 불응	도로교통법 제 19 조의 2 ①	불법 주차차 차량에 대하여 주차정차 방법의 변경 또는 이동명령에 불응할때
2	정비불량제차의 운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35 조	도로운송 차량법 또는 그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을때
3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39 조	혈액 1에 대하여 0.5 또는 호흡 1에 대하여 0.25 이상 음주하고 운전 하였을때
4	피로시의 운전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 40 조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기타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조	내 용
5	위험방지조치 위반	도로교통법 제 41 조	사유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을때 (도로침면, 굴곡운전등 현저한 과 로 상태) 음주 과로운전자가 운전금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 지시에 불응하였 을때
6	제한속도위반 (30 이 상)	도로교통법 제 41 조	속도위반 30 이상일때
7	교통사고발생시 신 고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 조(2)	경찰관(관서포함)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았을때 *소재지 - 3시간내, 시군읍면(경찰 서, 지서, 파출소, 출장소)의 소 재지내(고속도로포함) *기타소재지 - 12시간내
8	안전운행불이행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 43 조	타인에게 위해초래 행위중 ○진, 좌, 우 주시태만으로 위해 초래시 ○굴곡운전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하여 헨들을 좌우로 급조작 또는 급제동하는 행위 ○지선도로에서 간선도로에 진입 시 일단정지 불이행으로 직행 차량에게 현저한 위해를 초래 하였을때
9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 조	즉시 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 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 았을때
10	위험방지등의 조치 불응	도로교통법 제 47 조의 3	고속도로에서 위험방지 조치 지시 에 불응할때
11	지정속도 위반 (고속도로)	도로교통법 제 47 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속도에 위 반하였을때
12	긴급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내 용
	진입방해	제 47 조의 9 (2)	동차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을 때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면허증휴대 및 제시 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 64 조	면허증 또는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증표등을 휴대치 않고 운전하였을때 경찰관의 지시요구에 불응하였을때

표 2.)

취 소 처 분 기 준

일련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내 용
1	청원초과 가. 승합 50 %초과 나. 승용 40 %초과 다. 화물 3명 초과	도로교통법 제 33 조	시내미스에 한함. RH는 제외 (RH:출근시간전 2시간)
2	교통사고 야기 도주	도로교통법 제 45 조	사고발생시, 조치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시 다만,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90일 정지 처분
3	타인에게 면허 대여 (도난분실 제외)	도로교통법 제 55 조	면허소지자가 유면허가 또는 무면허자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운전하게 하였을때
4	결격사유	도로교통법 제 57 조	1. 18세 미만인자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16세 미만) 2. 필요시 취소 사유 가.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자, 농자, 야자, 맹자 나. 색맹자, 사지활동이 정상하지 아니한자 다. 아편, 마약, 알콜중독자 3. 면허취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효력의 정지를 받고 있는자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조	내 용
			4.1 종 대형면허를 받은자가 25세 미만이거나 3년 이상의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는자
5	적성검사 미필	도로교통법 제 61 조	운전면허를 받은날로부터 개 3년마다 3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연기제도 활용)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	도로교통법 제 65 조	
7	출두기일경과 불출두	도로교통법 제 68 조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자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8	허위부정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때	도로교통법 제 65 조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을때
9	위반점수 초과	도로교통법 제 65 조	1년에 12점 이상
10	타인의 면허로 운전 행위	도로교통법 제 44 조 7 항	면허취득자가 타인의 면허를 대여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로 운전하였을때
11	행정처분 기간중의 자동차 운전	도로교통법 제 44 조 7 항	운전정지증의 자동차를 운전하였을때 (교의, 과실불문)
12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될때		

(별표 3)

운 전 면 허 효 력 정 지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용법규	배정	내 용
1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39 조	30	혈액 1에 대하여 0.5 또는 호흡 1에 대하여 0.25 이상 음주하고 운전하였을 때

일련 번호	위 반 내 용	적 용 법 규	배 정	내 용
2	과속운전 가. 제한속도 10 미만 나. 제한속도 10 이상 30 미만	도로교통법 제 42 조	10 30	제한속도의 계동장치 기타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 도로상의 상황 및 차륜의 성능구조에 따라 타인에게 위배를 초래하였을때
3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제 11 조제 3 항	30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를 통행하지 않았을 때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지 않았을 때
4	운전사 준수사항 위반 승차거부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7 항	10	승차거부행위
5	운전사 준수사항 위반 자가용영업행위	도로교통법 제 44 조제 7 항	10	자가용 영업행위
6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불이행	도로교통법 제 45 조제 2 항 도로교통법 제 45 조제 2 항 "	30 15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관(관서)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때 * 소재지내 - 3시간내 시, 군, 읍면 (경찰서, 지서, 파출소, 출장소) 의 소재지내(고속도로 포함) * 소재지의외 - 12시간내 ○ 교통사고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는 하였으나 지연 신고하였을때 ○ 즉석(그때 그자리에서 곧)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소정시간내 신고를 하였을때

(별표 4)

교 통 사 고

1. 인명피해

배 점	구 분	사 망	중 상	경 상	신 고 (부양신고)	비 고
6점				1	3	
10				2	6	
15			1	3	9	
20				4	12	
25				5	15	
30			2	6	18	
35				7	21	
40				8	24	
45	1		3	9	27	
50				10	30	
60				11	33	
70			4	12	36	
80				13	39	
90				14	42	
100			5	15	45	
110				16	48	
120 이하				17	51	
121 이상	2		6	18	54	취 소

2. 재산피해

배 점	피 해 액	비 고
3	5,000 원 미만	
5	5,000 원 이상 - 4 만 원	
10	10 만 원 이하	
15	20 만 원 이하	
20	40 만 원 이하	
25	60 만 원 이하	
30	70 만 원 이하	
35	80 만 원 이하	
40	90 만 원 이하	
45	100 만 원 이하	
50	100 만 원 초과	

(별표 5)

처 분 가 준 의 한 계

1. 자, 상구분

의사의 진단 3주일이상을 중상, 5일이상 3주일미만을 경상, 5일미만을 부상신고로 한다.

다만, 부상신고 3명을 경상 1명, 경상 3명을 중상 1명, 중상 3명을 사망 1명으로 간주하여 면허 행정 처분한다.

2. 사망자의 처리기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24시간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부상자가 교통사고가 주원인이 되어 24시간 경과후 72시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으로 간주 처리한다.

3. 사고의 경합

인사사고와 불적사고가 경합되었을 때에는 중한만 1개의 처분만을 적용한다.

4. 피해액의 산출

재산피해액의 산출은 가해자와 피해자측에서 제시하는 견적서에 의하되 조사경찰관이 피해부분을 확인후 적정한 피해액을 산출 결정한다.

5.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

교통사고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판결(검사의 무혐의불기소 처분포함)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면허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

6. 행정처분의 결정

가. 중한규정의 적용

교통법규위반(원인행위)보다 결과발생(인적, 물적, 피해)이 경합 때에는 중한규정을 적용한다.

나. 어린이 교통사고

13세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당해 운전면허 행정처분후 1/2 가중한다. 다만, 6세미만의 유아 보호자의 보호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피해자 과실사고

운전자로서 불가항력적인 명백한 피해자의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라. 쌍방 과실의 경우(차대 사람)

자동차대 사람의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면허행정처분을 1/2 경감한다.

마.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원인과 결과중에서 중한점수를 합산 처리한다.

바. 인명피해사고중 운전자본인의 사상 정도는 피해자 숫자에 포함하지 않으며 물적 피해도 또한 같다.

(운전자 본인차의 물적피해는 계산하지 않으며 타인차량의 물적피해만을 계산한다)

사. 교통사고중 차대차 충돌사고발생인 경우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운전자만을 면허 행정처분 한다.

7. 배점 및 처분

가. 배점

운전자 1인 위반점수 120점을 상한점수로 한다.

나. 처분

(1)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기준에 의하여 4점이 될 때까지는 위반시마다 통고처분 또는 즉심에 회부하되 5점부터는 위반점수를 합산하여 1점에 1일 정지처분하고 120점에 도달할 때까지 점수는 계산한다.

(점 + 위반점수 = 정지일수)

다만, 한번 정지처분한 위반점수는 다음 위반점수에 합산 정지처분치 않는다.

(2) 국제 운전면허 소지자는 점수제 행정처분 배점기준에 따라 정지처분(보관)만 하고 취소 처분은 하지 않는다.

8. 타법령 규정 위반자

운수관계법령 및 기타 법령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심에만 회부하고 면허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의 규정에 관한 처분규정항목 위반은 3일 이내에 운수당국에 통보하여 차량 운행정지처분 하도록 조치한다.

<서식제 1 호>

교통법규위반운전자처리대장

(발급대장)

스티카 No	위 반 자					위 반 법 조	보 관 품	처 분 내 용			
	단속 일시	차 종	차 량 번호	면 허 번호	성 명			통고처분 (납출)	취소회부 (납출)	처 리	
										이 침 (경찰서)	훈 방 (일자)

집 행 내 용							운전면허행정처분			불이행자에대한조치				단속경관관	감독자확인	
통고처분		즉심회부		통고처분불이행시합 (즉심회부 포함)			처 분 기 간	보 관 품 반 환		1 차 최 고	2 차 최 고	취 소 상 신	취 소 일 자		담 당	계 장
납부한자	범칙금	회부일자	구류	과료	벌금	환영		일자	수령인							

(8 절 모조지)

<서식제 1 호>

교통법규위반운전자처리대장

(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순)	수리			스티카 No	위반자					위반 법조	보 관 품	처분내용		
	접수일자	단정 일 번	속시 시 호		난 후 일 사	차 종	차 량 번 호	면 허 번 호	성 명			통 고 처 분 (출 발 처 소 출 발 처 소 출 발 처 소)	고 심 회 기 두	부 부 하 일

집행내용							운전면허행정처분		불이행자에대한조치				감독자확인		
통고처분		즉심회부		(통고처분불이행시) 즉심회부포함			처 분 기 간	보관품반환		1차	2차	취소	최소	담당	계장
납부 일자	벌칙 금	회부 일자	구류	과료	벌금	환형		일자	수령 인	최고	최고	상선	일자		

(8절모조지)

<서식 제 3 호>

경 찰 서

문서번호 : 2038 ~ 19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벌칙금영수필통보

단속 일자	남부통고서 번호	남부 번호	위반자 성명	남부은행	남부일자

134^{mm} × 190^{mm}
 (인쇄용지특급 34g / m²)

<서식 제 2 호>

경 찰 서

문서번호 : 2038 - 19 . . .
 수 신 : 경찰서
 제 목 : 교통법규위반운전자단속이첩

위반 일시	차 종	차량 번호	번호	운전자 성명	위반 법조	보 판물	스티카 번호	스티카 번호	비고

첨부 : 면허증
 스티카

경 찰 서 장

134^{mm} × 190^{mm}
 (인쇄용지특급 34g / m²)

<서식 제 5 호>

체 호
최 고 서
(법칙금납부, 즉심출두)

제 차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 도	종 제 호
면허번호	(법칙금 납부기일경과 (납기일 19 . . .) 원)	
고유번호	(법칙금 (. . .)	
취사	(즉심불출두 (출두일자 19 . . .))	

위와 같은 사유 (안에 X 표) 로 최고하오
니 면허증 지참하시고 최고일로 부터 10
일 이내에 당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9

정 찰 서 장

※ 법칙금 납기일, 즉심출두일자로부터 1 개
월이 경과되면 귀처의 운전면허가 취소
됩니다.

<서식 제 4 호>

정 찰 서

문서번호 : 2038 ~ 19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법칙금미납자통보

단속 일시	차종 번호	차량 번호	면허 번호	운전사 명	반 번호	스티커 번호	비 고

정 찰 서 장

(인쇄용지투입 34 8 / m²)

134 mm × 190 mm

서식 제 6 호

경 찰 서

문서 번호 2038 -

19

수 신 : 경찰국장

참 조 : 교통 (면허) 과장

제 목 : 운전면허 취소상신 (통보)

면허번호	성명	취소사유	첨부분물 (보관품)

첨 부 : 매

경 찰 서 장

190 mm × 268 mm

(인쇄 용지 특급 34 g / m²)

서식 제 7 호

운전면허행정처분결과보고

문서 번호: 19

수 신: 경찰국장 경찰서장

일련 번호	운전면허		성명	위반년월일	스티카 번호	행정처분		비고
	종별	번호		위반법조		기간	보좌품	
						개월	일 (일간)	
						지월	일	

190 mm X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시식 제 8 호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결정서

1. 추 소 :

2. 면허번호 : 시 도 제 종 제 호

3. 성 명 :

4. 취소사유 :

(도로교통법 제 조)

19

서 문 특 별 시 장

- 귀하의 운전면허는 위 사유로 취소되었으니 취소된 당해면허를 7일 이내 주소지경찰서 또는 경찰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된 면허증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78 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 mm × 268 mm

(인쇄용지특급 34 g/m²)

서식 제 8 호

운전면허행정처분(취소)결정서

1. 주소:

2. 면허번호:

시 도 제 종 제 호

3. 성명:

4.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제 조)

19

서 물 특 별 시 장

- 귀하의 운전면허는 위 사유로 취소되었으니 취소된 당해면허를 7일 이내에 주소지경찰서 또는 경찰국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된 면허증을 반납치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 78 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0mm X 268mm

(신문용지 54g/m²)

실 효 면 허 증 수 배 대 장

일련 번호	주 소	주민등록 번호	문건번호	호	성 명	판 형 (경 과 판 형)	합 선 (소) 출 발	수 배 일 자	수 배 내 용	회 수 일 자	인		
											확 정	제 장	

268 mm X 190 mm
(인쇄용지특규 60 B / 규)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제 414 호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지적승인

1. 건설부 고시제 203 호 (75.12.20) 및 제 313 호 (78.10.20) 로 결정 및 변경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을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제 41 호 (77.3.16)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1

서울특별시장

0' 고속철도 (본선) 지적승인 조서

구 분	시설명	규 모	위 치	비 고
지적승인	도시고속 철도(지하 철순환선)	47.5 km 차량기지 인입선 1.50 km	시청-울지로-왕십리 -한양대-성수동- 화양동-잠실동-삼성교 -서초동-사당동-서물대 -봉천동-도림동-영등포 -서교동-신촌-아현동	사당동-시청- 하왕십리간 24.25 km 지적승인 (동교동- 아현동간 제외)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15 호

도시계획시설 (녹지) 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제 429 호 (78.8.26) 로 결정 고시된 당시국내 도시계획시설 (녹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77.3.16)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 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1

서울특별시장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0 시설녹지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경인제 1 녹지	고척동 71 - 개봉동산 22	23,760 m ²	
"	경인제 2 녹지	개봉동 189 - 온수동산 17	66,820 m ²	
"	경인제 3 녹지	개봉동 189 일대	15,800 m ²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416 호

양동제 7 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제 285 호 (78.9.26) 및
건설부고시 제 380 호 (78.11.30)
에 의거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
계획결정된 양동구역 제 7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같이 시행인가 하였기
도시재개발법 제 16 조 1 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
국 도시정비과 및 양동제 7 지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차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공람에공한다.

(관계도시생략)

1979.9.27

서울특별시장

다 음

가. 재개발사업의 명칭 : 양동제 7 지구
도시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특별 시종구양동
373 번지의 76 필지

○ 시행면적 : 25,296.2 m²

대 치 : 18,763.6 m²

건축면적 : 9,363 m² (적폐율 49.9%)

인 면적 : 71,959.27 m

(용적율 383.5%)

층 수 : 지상 17 , 지하 2 층

용 도 : 호 텔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종구양동
286 번지, 주식회사 동우개발

라. 시행기간 : 시행인가일 - 1983.3.

31 까지

마. 시행인가년월일 : 1979.9.27

바. 사용토는 수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가. 토 지									
사용또는 수용할토지, 건축물의 면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사용, 수용할토지)	소유권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면적단위: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중구양동145-10도로		775.2	93.2(145-10 -나, 다)	서울시	중구양동 286	한국신탁	중구양동 286	근저당
2	" 146	대지	146	146	대우개발	중구양동 147	은	중구양동 147	등 68-4
3	" 147	"	34.5	34.5	우현	"	"	"	"
4	" 148	"	28.5	28.5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	"	"
5	" 149	"	70	70	"	"	"	"	"
6	" 150	"	15	15	"	"	"	"	"
7	" 151	"	81	81	"	"	"	"	"
8	" 152	"	20	20	"	"	"	"	"
9	" 153	"	6.7	6.7	유	"	"	"	"
10	" 154	"	8.1	8.1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	"	"
11	" 155	"	43	43	"	"	"	"	"
12	" 156	"	40.5	40.5	"	"	"	"	"
13	" 157	"	1	1	"	"	"	"	"
14	" 158	"	79.7	79.7	"	"	"	"	"
15	" 159	"	29	29	"	"	"	"	"
16	" 160	"	25	25	"	"	"	"	"
17	" 161	"	11.5	11.5	"	"	"	"	"
18	" 162	"	29	29	동우개발	"	"	"	"
19	" 163	"	21	21	"	"	"	"	"

연번	지 번	지 목	지 처	시행변칙 (사용, 수용할트지)	소유평 성	주 권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20	중구양동 164대지		5.7	5.7	등우개발	중구양동 286	
21	" 165	"	18.9	18.9	"	"	
22	" 166	"	25.9	25.9	"	"	
23	" 166-1	"	0.8	0.6	"	"	
24	" 167	"	2	2	"	"	
25	" 168	"	30.7	30.7	"	"	
26	" 168-1	"	1.8	1.8	없음		
27	" 169	"	0.5	0.5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28	" 170	"	15	15	대우개발	"	
29	" 171	"	0.2	0.2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30	" 172	"	67	67	대우개발	"	
31	" 173	"	5.3	5.3	"	"	
32	" 174	"	27.8	27.8	"	"	
33	" 175	"	17.2	17.2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34	" 176	"	4	4	"	"	
35	" 178	"	9.1	9.1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36	" 179	"	9.2	9.2	박중교	" 179	
37	" 180	"	50.7	50.7	김백	" 180	
38	" 227	"	33.1	33.1	대우개발	" 286	
39	" 228	"	20.6	20.6	배수영	" 227	
40	" 229	"	11.4	11.4	대우개발	"	
41	" 230	"	31.9	31.9	심순생	"	중구남대문로 2/F 130 원시 근저당

환일은행

연번	지 번	지 목	지 려	시행목적 (사용, 수용알로지)	소 유 권 자		소 유 권 의 외 의 권 리
					성 명	주 소	
42	충구양동 231	대지	7.9	7.9	김영주	충구양동 230	
43	" 232	"	6.5	6.5	"	"	
44	" 233	"	36.5	36.5	이인선	" 233	
45	" 234	"	31.3	31.3	환병욱	" 234	
46	" 235	"	19.6	19.6	대우개발	충구양동 286	
47	" 236	"	79.7	79.7	도통교회	" 236	
48	" 237	"	46.3	46.3	"	"	
49	" 238	도로	366	(238-가, 나, 다) 147.7	시		
50	" 269	"	85.6	8.7	유		
51	" 269-1	"	10.5	0.4 (269-나) (269-1-나)	"		
52	" 270	"	6	6	"		
53	" 271	"	19.5	19.5	대우개발	충구양동 286	
54	" 272	대지	220.8	89 (272-나)	"	"	
55	" 274	"	519	45.6 (274-나)	"	"	
56	" 279	도로	65.3	65.3	유	"	
57	" 280	"	145.6	145.6	"	"	
58	" 280-1	대지	500.0	500	동우채밭	충구양동 286	
59	" 281-1	"	63.5	23 (281-1-가)	유		

연번	지번	지목	지적	시행면적 (사용, 수용할토지)	소유평면 성	주권자	소유명	소유권이외의권리
60	중구양동286	대지	3,244.8	567.5 (286-가, 나)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제일은행	중구양동로가 3번지 106 중로구관결 등 10
61	" 287	"	73.9	73.9	등우개발	"	"	"
62	" 289	"	1,416.1	1,416.1	"	"	"	"
63	" 290	"	44.4	44.4	"	"	"	"
64	" 291	"	15.3	15.3	유발	"	"	"
65	" 292	"	112.6	112.6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	"
66	" 293	"	20.8	20.2 (293-나)	대우개발	"	"	"
67	" 373	"	2,165.2	2,165.2	등우개발	"	"	"
68	" 373-1	도로	616.6	298.4 (373-1-다,라,마)	시	"	"	"
69	" 374	대지	31.4	31.4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	"
70	" 375-1	"	28.5	28.5	"	"	"	"
71	" 375-2	"	19	19	이성영	"	375-2	"
72	" 376	"	25.8	25.8	서성욱	"	376	"
73	" 377	"	80	80	등우개발	"	286	"
74	" 378	"	130.6	130.6	대우개발	"	"	"
75	" 379	"	36.4	36.4	문춘식의외 4인	"	379	"
76	" 380	"	98.8	68.2 (380-가)	문춘식의외 4인	"	379	"
77	무지번호로	도로		49	대우개발	"	286	"
계				7,652.6	시			

나. 천 물

순번	지 번	용 도	구 조	지척(정)	소유권자		소유권이의의권리
					성 명	주 소	
1	중구양동 373	유 개 택	연와조솔라브룸	30.25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2	" 374	주 택	목조세벤와슴 평가전	18	"	"	
3	" 375-1	주 택	철근콘크리트 조경육개	157	"	"	
4	" 375-2	주 택	철근콘크리트 평육개 4층건	51 2.64	이성영	" 375-2	
5	" 376	주 택	연와조평육개	59.04	서성욱	" 376	
6	" 180	주 택 주택및점포	철근콘크리트 조평육개	115.56	김교백	" 180	
7	" 179	주 택 주택및점포	철근콘크리트 조연와조	23.25	박중욱	" 179	
8	" 178	주 택 주택및점포	연와조	28.37	대우개발	" 286	
9	" 172	"	철근콘크리트 조평육개	108.21	"	"	
10	" 158	주 택	" 1,2층 (지하층) 3층	147.9 50.92	"	"	
11	" 160	"	철근콘크리트	8.49	"	"	
12	" 158	"	철근콘크리트 조평육개	20 9	"	"	
13	" 150	"	목조세벤와슴	8	"	"	
14	" 149	교	연와조도단습	50.2	"	"	
15	" 151	강	목조세벤와슴	40.7	"	"	
16	" 152	변	세벤와슴	3.4	"	"	
17	" 152	수	"	4.8	"	"	

순번	지 번	용 도	구 조	지척(형)	소 유 권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8	중구양동146	주 택	철근콘크리트 연와조평옥개 (옥탑)	121.15	대우개발	중구양동 286		
19	"	"	목조와즙	44	"	"		
20	"	"	철근콘크리트 평 옥 개 (지 하 층)	19.36	"	"		
21	"	"	연와조세멘트와즙	5	"	"		
22	"	"	목조와즙	13	이 옥 현	중구양동 147		
23	"	"	"	3.47	"	"		
24	"	"	목조세멘트와즙	19	배 수 영	중구양동 227		
25	"	"	"	11.5	대우개발	" 286		
26	"	"	"	8.19	"	"		
27	"	"	"	41.5	김 순 생	중구양동 230		
28	"	"	"	26.66	"	"		
29	"	주 택	연와조슬라브	46.61	이 인 현	중구양동 233		
30	"	주 택	연와조평옥개	54.35	한 병 옥	" 234		
31	"	"	세멘트보력조	9.5	대우개발	" 286		
32	"	회 사	석조빛연와조 단 습	173.16	재단법인 기 독 교 감 리 교	" 236		
33	"	주 택	세멘트보력와조	15.86	"	" 236		
34	"	"	목조세멘트와즙	48.64	문춘식의 4 인	" 379		
35	"	"	연와조세멘트와즙	12.12	"	" 379		
계				1,616.51				

◎서울특별시고시제 41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56 호 (78.10.25)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77.3.16)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7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 : 성북구정릉동 885 번지의 8 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
학교법인 국민학원
- 3. 면적 및 규모 : 총면적 113.813 제곱미터중 10.667 제곱미터
- 4. 시행자 주소, 성명 : 성북구정릉동 861-1

학교법인 국민학원이사장 이동화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 년월일 : '79.9

나. 준공 예정일 : '80.6.30

- 6. 위치 및 계획영역도 : 별첨(도면생략)

- 7. 공사설계도면 : 별첨(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418 호

도시계획시설(시장,수산물공판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시장,수산물공판장)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동법 제 13 조, 건고시 제 41 호('77.3.16)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 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7

서울특별시장

○ 도시계획시설 (시장, 수산물 공판장) 변경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확정	
수협수산물 공판장	동대문구용두동 11-4일대	794.36평 (2,62,㎡)	증413.4평	1,207,76평	추가

※ 별첨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19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학교)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학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하였기 건설부 고시 제 41 호
('77.3.16) 권한 위임사항 및

도시계획법 제 1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9.2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학교) 변경조서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확정	
서울운동장	중구을지로 7 가 일대	124,560	감667.3	123,892.7	증 14.9 감 682.2
한양중·공고	중구신당동 251-23 일대	13.942	증667.3	14,609.3	증 682.2 감 14.9

※ 별첨 도면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20 호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7
서울특별시

가.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의청사	마포구 성산동 산 2-28 부근	24,728 ㎡ (7,480 평)	
변경후	"	"	12,357 ㎡ (3,738 평)	해 제 3,742 ㎡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421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정정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656 호 (78.12.5) 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결정고시와 상이하게 지적고시되어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41 호 (77.3.16)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 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8
서울특별시

가. 지적승인 기점 및 정정내역

1) 도시계획 시설조서 (기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2	1	8미터	520미터	종암동 70-1	종암동 3-551
"	"	2	2	"	260	" 59-9	" 78-67
"	"	2	3	"	150	" 79-182	" 82-22
"	"	2	4	6미터	610	" 55-10	" 20-5
"	"	2	5	"	90	" 78-83	" 4
"	"	2	6	"	150	" 70-76	" 2-3
계					1,780미터		" 79-6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2) 도시계획 시설조서 (정정)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인 장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2	1	8미터	610미터	충암동 83-11	충암동 58-3
"	"	2	2	"	20 "	" 3-556	" 79-104
"	"	2	3	"	30 "	" 79-266	" 83-3
"	"	3	1	6미터	486 "	" 3-1045	" 79-266
"	"	3	2	"	349 "	" 81-7	" 81-210
"	"	3	3	"	134 "	" 79-104	" 81-12
"	"	3	4	"	149 "	" 79-104	" 79-179
"	"	3	5	"	203 "	" 79-53	" 78-223
"	"	3	6	"	147 "	" 79-266	" 70-8
"	"	3	7	"	430 "	" 78-255	" 62-35
"	"	3	8	"	194 "	" 78-261	" 78-97
"	"	3	9	"	140 "	" 47-2	" 46-39
"	"	3	10	"	464 "	" 55-10	" 20-2
계					3,356		

민첩도미 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2 호

도시계획 (학교) 사업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3 호 (78. 9.12) 도시 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된 당시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을 도시 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1 호 (77.3.16) 권 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성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8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지 : 성북구 안암동 5 가 산 1-2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 사업 (학교) 고려대학교
3. 면적 및 규모 : 기시행면적 12059. 93 제곱미터 (3655평) 변경시행면적 12821.14 제곱미터 (3878평)
4. 시행자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안암 동 5 가 1 번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 원 이사장 이 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78.4.25
 나) 준공예정일 : 80.5.15

- 6. 위치 및 계획 평면도 : 별첨 (도면 생략)
- 7. 공사설계도면 : 별첨 (생략)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423 호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지적승인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244호 ('78.5.27) 제 10호 ('79.1.10) 에 의

거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학교,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1호 ('77.3.16) 권한 위임 사항에 따라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설 (학교) 지적 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	비 고
신 설	창서국민학교	서대문구창천동 53-38 일대	11,440 (3,460.6평)	서울시고시제 244호 ('78.5.27)
"	수색국민학교	수색동 125-1 일대	17,823 (5,391평)	서울시고시제 10호 ('79.1.10)
"	인왕국민학교	홍제동 245-1 일대	11,847 (3,583평)	"
"	안산국민학교	홍제동 44 일대	16,830 (5,091평)	"
"	대신국민학교	대현동 67-1 일대	15,161 (4,586평)	"
"	미동국민학교	미근동 36-1 일대	10,934 (3,307평)	"
"	홍제국민학교	홍은동 48 일대	12,718 (3,847평)	"

나. 도시계획 시설(도로)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변경	소로	3	6미터	105	창천동 53-38	창천동 53-38	폐지
기정 변경	소로	3	"	86	수색동 205-58	수색동 205-69	폐지
기정 변경	소로	3	"	44	홍제동 243-1	홍제동 266-52	폐지

"별첨 도면표시와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4 호

취락구조개선사업을위 한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기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20호 (79. 7.13) 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 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 성사업) 시행허가된 사항을 도시계 획법 제 24조와 제 25조 동법시행 령 제 7조의 2, 전설부 고시제 41호 (77.3.16) 에 의거 이를 시행허 가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 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 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 인다.

1979.9.29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강서구 신정동 765 의 103 필지 (불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일 단외주택지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66,055㎡ (19,981.5평) (불변경)
4.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설명: 강서 구 신정동 781-14 장명환 (불변경)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가. 착공: 허가 시행일로 부터 7 일내 나. 준공: 79.9.30
6.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 적, 소유권 권리명세 (불변경) (별 첨조서참조) (별첨조서생략)
7. 시설조서 (위치변경): (별첨조서 참조) (별첨조서생략)

8. 시행허가변경내용

용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적	면적	지적	면적	
마을회관	신정 766-1의 2필	1515㎡	신정 769-5의 3필	1515㎡	위치변경
아동공원	신정 768의 6필	3164㎡	신정 768의 7필	3164㎡	위치변경

◎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5 호

도시계획미관지구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 도시계획미관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 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 41호 (77.3.

16) 권한 위임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9.9.29

서울특별시 장

가. 지적승인내역

종별	변경 전			종별	변경 후			비고
	위치	연장	면적		위치	연장	면적	
2	신흥덕동-충정로	2,800미터	67,200평방미터	2	신흥덕동-충정로	2,680미터	107,200평방미터	양측 20미터
4	사천교-망원동	2,000미터	105,600평방미터	4	사천교-망원동	2,000미터	30,000평방미터	편측 15미터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13 호

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에정지지정공고

1. 서울특별시 공고제 277 호 (79.8.8) 로 환지계획 공람공고한 장안평토지구획정리 지구 및 잠실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 하였기 공고한다.

정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한다.

1979.9.15

2. 환지에정지 변경도서는 도시정비국 기획정리과와 동대문구청 및 성동구

서울특별시장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 내역

사업명	변경면적	변경위치
장안평지구	29,995.5평	동대문구 장안동 88의 6외 10필
잠실지구	108,691.1평	강남구 가락동 410의 14호외 31필

◎ 서울특별시 공고제 317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및하수도)
실시계획공람공고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도록함.

1979.9.9.

서울특별시장

1. 서울시고지 제 3 호 (1969.1.18) 로 실시 결정 및 지적 승인된 공사 구간내에 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실시 재확을 수립하고자 도시 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34 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응하고자 이에 공고함.

공 랑 개 요
가. 사업장위치 : 서대문구녹번동63-1번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로및하수도 녹번동63-1지내 도로신설공사
다. 사업의규모 : 도로폭 6m 연장 90 m 하수도 (휴관 (D600) : 84 m 암거 (2 × 2) : 67 m)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은평출장소장)
마.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79.9.25 ~ 79.12.25
바.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벌침토지조시참조
사. 토지또는건물의소유자와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주소및성명 : 벌침토지조서

2.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다.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3. 관련도서는 은평출장소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 토 지 조 서

순 번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저 축 평 수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녹번동	75- 1	대	6.05	녹번동 75-1	전 이 선
2	"	75- 7	대	6.35	수 원 519-174	박 준 용
3	"	75- 8	대	10.89	녹 번 75-18	김 종 선
4	"	75- 9	대	6.65	응 암 283	정 덕 유
5	"	75-38	대	4.84	녹 번 75-38	김 영 민
6	"	73- 8	대	4.84	" 75-4	성 춘 근
7	응암동	63- 1	대	2. 1	" 134-4	유 정 근
8	"	61-86	대	3.02	불광동 230-25	황 종 성
9	"	61-85	대	10.89	"	"
10	"	61-50	대	16.94	응암동 61-50	김 영 신
11	녹번동	73- 2	대	59.43	녹번동 75-4	성 춘 근

○ 건 물 조 서

순 번	건 발 소 재 지		지 목	저 축 평 수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주 소	성 명
1	녹번동	75-1		1	녹번동 75-1	전 이 선
2	"	75-7		2	75-7	박 회 욱
3	"	75-8		2.5	75-8	김 종 선
4	"	75-9		1.5	75-9	박 종 회

◎ 서울특별시 공고제 322 호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한다.

출장소위치변경공고

1979.9.

서울특별시 천호출장소의 위치를

서울특별시정 상 천

○ 위 치 변 경 내 용

출 장 소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이 친 일 자
천 호 출 장 소	강남구천호동 397-53	강남구 성내동 303	79.9.24

◎ 서울특별시공고제 323 호

공인개각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개각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 9.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 마포경찰서장인
- 2. 사용개시일 : 1979. 10. 1
- 3. 공인의인영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
인
명

마포경찰서장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324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 9.

서울특별시장

- 1. 공인명 : 종로구청제인(호적, 병사용)
- 2. 사용개시일 : 1979. 10. 1
- 3. 공인의인영

공 인 의 인 영

인

영



공
인
명

종로구청제인
(호적, 병사용)

◎ 서울특별시공고제 326 호

환지처분 (망우추가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공고

- 1. 당시가 시행한 망우추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청산금이 결정되어 별첨 도서 내용과 같이 환지처분 하있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 2. 환지확정 지정서 및 도면은 당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봉랍에 공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봉지 합니다.

1979. 9. 29.

서울특별시장 정삼천

사 업 내 역

- 가. 사업명 : 망우추가토지구획정리사업
- 나. 위 치 : 도봉구농릉동 일부
- 다. 면 적 : 249,498.6 평 (2,200필지)

◎ 서울특별시공고제 327 호

환지계획일부변경인가및환지
예정지변경지정공고

- 1.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1호 (78.6.22)

로 환지계획 변경공람공고 한바 있는,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일부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9 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계획 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에정지를 변경 지정 공고 한다.

-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 한다.

1979. 9. 29.

서울특별시장

(사 업 내 역)

- 가. 사 업 명 : 잠실토지 구획정리 사업
- 나. 변경면적 : 28,330 평
- 다. 변경위치 : 강남구방이동154-1 의 125 필지

◎ 서울특별시 공고 제 328 호

공인신조사용승인공고

서울특별시 공인을 아래와 같이
신조사용 승인하였기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제9조에 의거 공고한다.

197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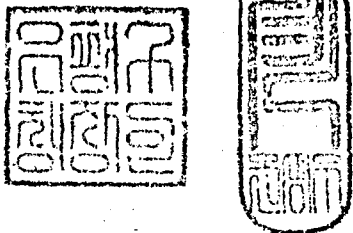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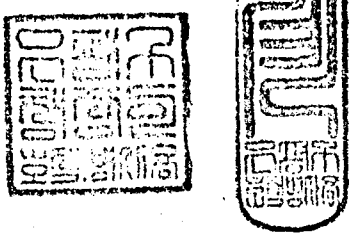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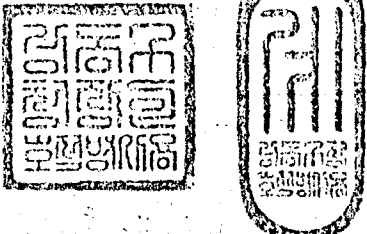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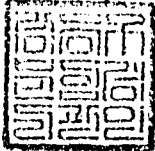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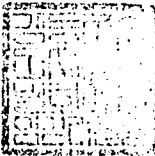

1. 공인명 : 1) 은평구청장인
- 2) " 계인
- 3) 은평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 4) 은평구청장계인 (호적, 병사용)
- 5) 강동구청장인
- 6) " 계인
- 7) 강동구청장인(호적, 병사용)
- 8) " 계인 (")
- 9) 강동구분임경리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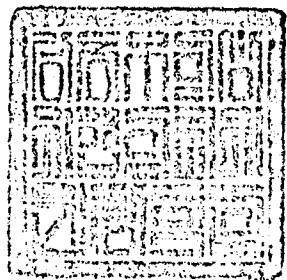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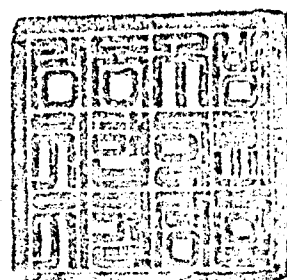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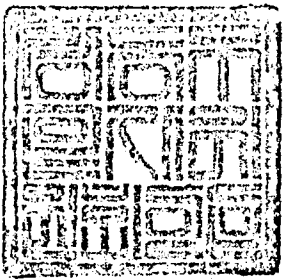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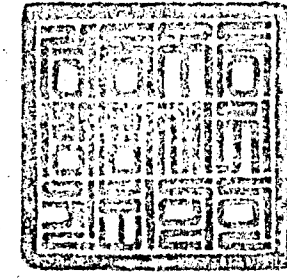
- 10) 강동구정수관의인
-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품
관리관의인
- 12) 강동구 재개발사업 기금
장수관인
- 13) 강동구 재개발사업기금
분임경리관인
- 14) 강동구 수도사업 특별
회계 장수관인
- 15) 강동구 수도사업 특별
회계분임 경리관인
- 16) 강동구 수도사업 특별
회계 물품관리관인
- 17) 강동구 민방위 협의회
위원장의인
- 18) 강동구 방위 협의회위원
장의인
- 19) 강동구 인사위원회 의인
- 20) 강동구 동장 징계위원회
의인

2. 사용개시일 : 1979. 10. 1

3. 공인의 인영

인 영		인 영	
공인명	은평구청장직인및계인	공인명	은평구청장직인및계인 (호적병사용)
인 영		인 영	
공인명	강동구청장직인및계인	공인명	강동구청장직인및계인 (호적병사용)
인 영		인 영	
공인명	강·동구분임경리관인	공인명	강동구정수관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강 동 구 물 품 관 리 관 인	공인명	강 동 구 재 개 발 사 업 기 금 징 수 관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강 동 구 재 개 발 사 업 기 금 분 입 경 리 관 인	공인명	강 동 구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징 수 관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강 동 구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입 경 리 관 인	공인명	강 동 구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물 품 관 리 관 인

<p>강 동 구 민 방 위 협 의 회 위 원 장 인</p>		<p>강 동 구 민 방 위 협 의 회 위 원 장 인</p>	
<p>강 동 구 인 사 위 원 회 인</p>		<p>강 동 구 동 장 정 계 위 원 회 인</p>	

◎ 서울특별시공고제 330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
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제 109호(76.7.19)로
고시된 공항입구 가각정리 공사
구간내에 저촉 편입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을 수련하
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동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하고자 이에 공고함.
 2. 관계도시는 강서구청 도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가. 공고장소 : 강서구청 게시판

나. 공고기간 : 1979.9. . - 1979.10. . .

1979.9. . .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장위치 : 강서구공항동48의45-
48 의 15
2. 사업의종류와명칭 : 공항입구 가각
정리공사
3. 사업의규모 : 가. 폭=22미터-65미터
나. 인장=150 미터
다. A=36.4a
4. 사업의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 :인가일-1979.12.30
6. 사용또는수용할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 에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토 지 조 서

동 명	지 번	지 목	평 수,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공항동	48-32	대	50㎡	공항 72-48	노영만외 2	
"	48-44	"	470"	방화산 17	이인상	
"	"-42	"	82"	"	"	
"	"-16	도	33"	"	"	
"	"-30	대	40"	공항 48	차상익	
"	"-41	"	5"	"	"	
"	"-33	"	60"	방화산 17	이인상	
"	"-40	"	26"	공항 48-27	이윤상	
"	"-39	"	27"	" 48	박지희	
"	"-38	"	35"	" 48	백낙형	
"	"-2	임	20"	" 161	이한성	
"	"-20	대	10"	" 50	박춘자	
"	"-21	대	7"	" 161	이한성	
"	"-22	"	20"	방화 620-25	임용자	
"	"-23	"	30"	방화산 17	정주현	
"	"-24	"	26"	"	홍순례	
"	"-25	"	136"	공항 161	이한성	
"	"-9	"	13"	방화산 17	강옥례	
"	"-26	"	66"	"	"	
"	"-10	"	23"	공항 161	이한성	
방학동	620-228	"	111"	"	"	
"	620-229	"	108"	방화산 17	강옥례	
"	621-26	"	4"	방화 621-19	조숙자	
"	621-27	"	1"	방화산 17	김기덕	
"	621-28	"	5"	방화 621	김기덕	
"	621-29	"	2"	" 621-15	최광현	
"	621-30	"	4"	방화산 17	강옥례	
"	620-230	"	43"	공항 161	이한성	
공항동	73-1	도로	56"		국	} 권리청 채신부
"	73-15	대	48"		"	
"	48-5	임야	23"		"	
	계		1,584"			

◎성동구공고제 485 호

한다.

공인개작공고

19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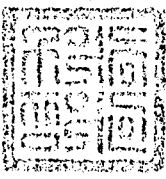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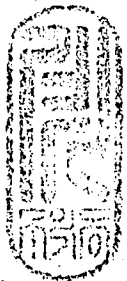

성 동 구 청 장

관인규정 제 8 조 및 서울특별시공
인조례 제 6 조의 규정에 따라 당구
구의동장 직인, 계인을 개작 1979.
10.12 09:00 부터 사용을 승인하였
기 동조례 (9) 조에 의거 이를 공고

- 1. 개작공인명칭 : 구의동장직인, 계인
- 2. 사용개시일 및 폐인일자 :
79.10.12 09:00
- 3. 신조 공인인영 및 폐인인영 : 별첨

신 조 공 인 인 영

폐 인 공 인 인 영

인 영		인 영	
공인명	구 의 동 장 직 인	공인명	구 의 동 장 직 인
인 영		인 영	
공인명	구 의 동 장 계 인	공인명	구 의 동 장 계 인

사 령

발령 제 348 호

◎ 1979.9.21

민방위국장 서상빈
이사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대통령

발령 제 341 호

◎ 1979.9.24

지하철본부장 신문수
지방시설기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발령 제 338 호

◎ 1979.9.25

강원도원주시 김도래
지방보진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동대문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의성군 박재관
토목기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 토목기사에 임함.
마포구 근무를 명함.

철도청서울역 권경택
8 등 급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철도원 8 등급에 임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칠곡군 김삼열
지방토목기사보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강서구 근무를 명함.

경상북도청도군 이희진
지방토목기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하철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발령 제 343 호

1979.10.1

성명	발령사할		원부서	직급
	부서	직급		
우명규	지하철본부장	지방시설부기감	하수국장	시설부기감
박원선	하수국장(직대)		도로시설과장	토목기정
이희형	민방위국장	부이사관	수도행정담당관	지방부이사관
심두한	건축국장	시설부기감	주택정비사업	지방
이집홍	새마을담당관	지방부이사관	사업소장	시설부기감
			새마을담당관직대	지방서기관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부 서	직 급		
신 현 석	도시계획담당관	지방부이사관	교통기획담당관직대	지방서기관
심 계 섭	문화공보관(직대)	지방부이사관	공무원교육원	서 기 관
김 진 욱	교통기획담당관 (구로구청장비요원)	지방부이사관	남서울대공원소장	지방부이사관
김 인 동	수도행정담당관 (동작구청장비요원)	지방부이사관	문화공보관	부이사관
안 기 호	은평구청장직대	부이사관	은평출장소장	지방서기관
이 순 용	김동구청장직대	부이사관	친호출장소장	지방서기관
안 상 영	남서울대공원소장	지침시설부기감	지하철건설차장	지방시설부기감
변 의 정	지하철차장	지방부이사관	지하철관리차장	지방부이사관

발령제 349 호

1979.10.1

성 명	발 명 사 항	현 직	직 급
박 종 우	총무과장	인 사 과 장	서 기 관
김 문 중	예산 1 담당관	회계 1 과장	"
박 형 석	" 2 "	성북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강 덕 기	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서 기 관
박 한 경	통계담당관(직대)	종로시민국장	지방서기관
도 명 정	시정개발담당관	도봉민방위국장	서 기 관
전 명 호	의전과장	관재과장	"
이 문 제	인사과장(직대)	중구총무국장	지방서기관
김 치 운	문화재담당관()	종합운동장건설본부관리 과장	"
엄 주 창	회계 1 과장()	도시가스사업소장	"
이 상 익	관재과장()	중구시민국장	"
권 태 정	영선과장	건축지도과장	건축기정
남 상 수	보건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서 기 관

성 명	발령사항	현 직	직 급
이용우	의약과장 (직대)	영등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
신태희	청소년과장 (")	부녀·과부녀보호재장	지방행정사무관
안병대	복지과장	용산시민국장	서 기 관
황철민	청소 " "	문화재담당관	"
황병주	환경 1 과장	환경과장	공업기정
유익현	" 2 "	보건예방과장	보건기정
김두한	상정과장	연료과장	서 기 관
김수철	연료 " "	주택행정과장	"
김용주	양정 " "	통계담당관	"
이재환	주택행정 " "	업무과장	"
오기철	주택관리 " "	동대문민방위국장	"
장기찬	주택공사과장 (직대)	주택건설사업소공사 2 과장	지방토목기정
김두기	건축행정과장 (직대)	강서총무국장	지방서기관
김김배	건축지도과장	영선과장	건축기정
정석현	재개발 1 과장	치수 " "	토목 " "
김원근	조경과장	상정 " "	서 기 관
피상진	공원과장	조경 " "	농림기정
김의재	도로관리과장	공원 " "	서 기 관
김두영	도로시설과장	도로보수과장	토목기정
장인석	도로보수과장 (직대)	노량진수원지사무소장	지방 " "
강대연	운수 2 과장 (")	강서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허용	치수과장 (")	선유수원지사업소장	지방토목기정
박현원	업무과장	청소 1 과장	서 기 관
김주섭	경리과장	운수 2 " "	"
이기창	수원시설과장	급수과장	토목기정
유봉환	급수과장	수원과장	"
노원식	영선과근무	종합운동장기술실	지방건축기정
정지호	세무행정과장	세무 1 과장	서 기 관
구본룡	과징과장	" 2 "	"

성명	발령사항	현직	직급
최종무	재개발 2 과장	주택개발과장	토목기정
이충우	교통행정과장	운수행정과장	서기관
구순희	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 1 과장	토목기정
허재구	지역담당관	순찰담당관	서기관
김용호	중구총무국장	성북총무국장	지방서기관
이응선	동대문 "	마포 "	"
서승택	성북 "	동대문 "	"
이을삼	도봉 "	도봉건설관리국장	"
이광우	마포 "	영등포시민국장	서기관
한상건	용산 "	도봉총무국장	지방서기관
허완	강서 "	강서시민국장	"
배병호	영등포 "	관악총무국장	"
이규현	강남 "	서대문시민국장	"
김영근	관악 " (직대)	보건행정과장	서기관
원지윤	은평 "	지하철본부운수과장	지방서기관
인태명	강동 "	용산총무국장	"
이창희	종로시민국장	도봉시민국장	"
박희중	중구 "	강남병원사무과장	"
이준우	동대문 "	종로건설관리국장	"
신옥범	도봉 "	관악시민국장	서기관
박영곤	강서 "	마포 "	지방서기관
임경선	서대문 " (직대)	마포민방위국장	서기관
이상식	영등포 " (")	지하철본부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이경만	관악 "	마포건설관리국장	"
최명식	은평 " (직대)	종로민방위국장	서기관
김영구	강동 "	공무원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장세환	종로건설국장	공무원교육원사무과장	"
손장호	중구 " (직대)	성동민방위국장	서기관
실진성	동대문 "	동대문건설관리국장 (직대)	지방토목기정

성명	발령사항	현직	직급
신영우	성동건설국장	관악건설관리국장	지방토목기정
이장열	성북 " (직대)	강서민방위국장	서기관
김영준	도봉 "	지하철본부경리과장	지방서기관
김익수	마포 " (직대)	영등포민방위국장	서기관
윤두영	용산 " (")	용산 "	"
전만진	강서 "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이신영	서대문건설관리국장	지하철건설 2 과장	지방토목기정
추교남	강남 "	동대문시민국장	지방서기관
김교준	관악 "	토목시험소장	지방토목기정
박승덕	은평 "	성동시민국장	지방서기관
최재범	강동 " (직대)	하수시설 1 과계획계장	지방토목기과
조희범	종로도시정비국장	하수국근무	지방토목기정
김정길	중구 "	성동구건설관리국장	"
박정길	동대문 " (직대)	성북민방위국장	서기관
김동일	성동 " (")	관악 "	"
김형승	성북 "	공무원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김병용	도봉 " (직대)	시설관리과장	서기관
변영진	마포 " (")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과
노대식	용산 " (")	주택건설사업소공사 1 계장	"
이계춘	강서 "	용산건설관리국장	지방서기관
권오록	종로민방위국장 (직대)	공무원교육원교수부	지방행정사무관
신중식	동대문 " (")	"	행정사무관
손상은	성동 " (")	"	지방행정사무관
이호조	성북 " (")	감사담당관감사 1 계장	"
이병규	도봉 " (")	회계 1 과계약계장	"
반상균	마포 " (")	새마을지도과새마을계획 계장	"
조삼섭	용산 " (")	서대문총무과장	"

성 명	발령 사항	현 직	직 급
박승만	강서민방위국장 (직대)	강남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영준	서대문 " (")	중구 "	"
홍기화	영등포 " (")	성북 "	"
이문수	은평 " (")	하수시설과하수행정계장	"
권석	관악 " (")	세무1과세정계장	"
신영진	강동 " (")	공무원교육원교수부	행정사무관
서동기	지하철본부서무과장(직대)	지하철본부관리기획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종옥	" 운수과장	강남총무국장	지방서기관
최중균	" 건설1과장 (직대)	도시정비과장	토목기정
정광훈	" 건설2과장	서대문건설관리국장	지방 "
유래봉	중합운동장건설본부관리과 장(직대)	" 민방위국장	서기관
윤락환	공무원교육원서무과장	공무원교육원교수부	지방서기관
김명주	새종문화회관서무과장	주택관리과장	서기관
안식환	도시가스사업소장(직대)	경리과장	"
정만호	강남병원서무과장 (")	청소2과장	"
강춘영	남서울대공원건설사업소 관리과장	주택건설사업소관리과장	지방서기관
최성삼	선유수원지사업소장 (직대)	총무과관리1계장	지방전기기좌
이평재	노량진 " "	지하철본부건설1과장	지방건축기정
이후철	토목시험소장(직대)	하수시설2과장	토목기정
정병상	영등포보건소장	강남구보건소장	지방의무기정
신기준	강남 " "	의약과장	"
권이금	동작구준비요원	양정과장	서기관
최경수	" "	강서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하삼근	" "	주택정비과	"
장영순	" "	공업과공정1계장	"

성 명	발령 사항	현 직	직 급
안종윤	구로구준비요원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	지방시기관
이상익	"	"	행정사무관
채홍식	"	종로구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홍종민	"	도로과도로1계장	지방토목기좌
이영재	산업국근무 (유통센터준비요원)	연료행정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준	공무원 교육원근무	문화공보관	"
유문호	"	마포구	"

서울특별시장